

2017-03 책임연구보고서

북한 형사법 체계 및 개정형법에 관한 연구

권오국



목 차

I. 서론	7
제1절 문제의 제기	7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9
II. 북한 형사법 체계의 형성과 변천	12
제1절 사회주의 법이론과 체계	12
1. 사회주의 법개념과 법원(法源)	12
2. 1948년 헌법과 개정사	17
제2절 형사법의 체계와 발전	22
III. 북한의 제·개정 형법 내용 분석	30
제1절 형법 제·개정 경과	30
1. 제정 형법	30
2. 형법 개정사	34
제2절 김정은 집권이후 형법 개정 내용	52
1. 북한법전 개관	52
2. 주요 조문 분석(2012~2015)	53

IV. 북한 형법 적용사례	69
제1절 범죄유형과 실태	69
제2절 외국인 강제억류자 처리	73
1. 외국인 억류자 현황	73
2. 형법적용 조문분석	75
V. 결론	79
참 고 문 헌	82
부록	86



표 목 차

<표 I -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9
<표 II -1> 제정기관에 따른 법령 제정 방식	15
<표 II -2> 헌법 개정 주요내용	20
<표 II -3> 형사소송법 개정사	25
<표 III-1> 북한의 제정 형법 체계	31
<표 III-2> 북한 형법의 제·개정 경과	34
<표 III-3> 2004년과 2009년 개정형법 비교	41
<표 III-4> 형법의 임무 규정 변화	43
<표 III-5>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규정의 변화	44
<표 III-6> 2015년 형법에 의한 범죄유형과 범죄명	46
<표 III-7> 북한형법상 형벌의 변화	50
<표 III-8> 북한 형벌의 내용 비교	51
<표 III-9> 법제처의 분류기준에 따른 부문별 법률 제·개정 현황	52
<표 III-10> 형법 신·구조문 대비표	53
<표 IV-1>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게재된 범죄유형	70
<표 IV-2> 북한의 외국인 억류 사례	73
<표 IV-3> 북중 관광노선 개설 현황	74
<표 IV-4> 북한 형법상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76

I.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북한은 3대 세습 독재체제를 이어 오면서 수령의 교시를 최우선으로 하고, 선군정치의 기치하에 전 국가조직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 체제의 특수성에 대하여 누군가로부터 “북한에 과연 사법제도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될 경우, 전공자가 아니면 선뜻 답을 하기가 어렵다. 그만큼 북한의 사법제도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알려진 바가 적고, 이에 관한 실증적 연구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¹⁾

그럼에도 최근 북한 당국의 법에 대한 관심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2016년 7월에 출판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에 의하면 “법은 인민정권이 정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모든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회공동의 행동규범”이라고 전제하고, “현실의 요구에 맞게 제정하고 완성하여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는데,²⁾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2016년 6월에 개정된 헌법을 통해 김정은은 명실공히 자신의 시대로 진입했음을 내외에 천명했다. 즉,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개칭하고, 최고영도자(헌법 제100조)와 최고사령관(헌법 제102조)의 지위와 권한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는 궁극적으로 법·제도적 뒷받침이 있어

1) 이백규,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 『통일과 법률』(서울: 법무부, 2015), 34쪽.

2)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평양: 모란봉인쇄공장, 2016), 1쪽.

야 가능하다. 그 중에서 북한형법은 유일한 형사실체법으로서 북한체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한 나라의 형사법 체계는 그 어느 나라이든 이념과 가치, 전통을 포함하며,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지표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법이란 특정 국가의 구성원들이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내용들을 규정하며, 사회·생활상의 변화에 따라 처벌의 필요성이 바뀌면 이에 따라 형법도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형사법에 대한 연구는 작금의 북한을 이해하는데 하나의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북한의 형법 연구는 향후 남북한 통합시 형사법 분야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다양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남북한 교류·협력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를 예견해 보는데도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특히, 세계의 고립된 섬이자 은둔의 나라인 북한을 이해할 때, 북한의 법률체계와 그에 대한 분석은 그 사회 내부의 주요 현상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비록 남북한의 법에 대한 관점은 서로 상이하나, 북한 법령에 대한 현황과악 및 분석이 선행되어야 향후 다가올 화해·협력 및 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전술한 문제 의식하에 북한을 이해하고 접근하는데 있어서, 기존의 접근방법과는 다르게 북한 법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함으로써, 통일기반 조성과 향후 다가올 남북한 형사법 통합에 기여하고자 할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이 연구는 북한법을 연구함에 있어서 법학 이외 정치학 등 인접 학문과의 연계성 하에서 이뤄졌다. 왜냐하면 북한법은 후술하겠지만, 우리나라와 달리 정치우선주의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정치적 사건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한법에 대한 기존연구는 헌법, 대외관계법, 경제법 등 일부 법령 분석과 동향에 초점을 맞춰왔다. 법제처의 북한법 연구자료도 현실적 필요에 따라 일부 법률과 사회주의 법 일반에 대해 고찰하고 있을 뿐이다.³⁾ 다만, 형사법과 관련하여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연구의 초점은 남북한 형사법 통합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⁴⁾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관련 논문 (저자 등)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연구내용
박학모,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 통합연구」(형사정책연구원, 2016)	독일통일의 경험에 기초 남북한 형법 통합의 방향 및 기본원칙 연구	문헌연구 사례분석	남북한 형법통합을 위한 북한형사제재체계 검토 형사사법제도 및 사법기관 통합관련 과도적 조치
신의기, 「통일대비 북한범죄자 처리방안에 관한연구」(형사정책연구원, 2015)	통일이후 북한정권에 대한 불법청산 및 처리방안 연구	문헌연구	북한의 범죄자처리 관련 법제 검토 북한의 범죄실태와 범죄자 처리
도중진, 「통일대비 북한 형사법령 통합방안	통일대비 남북형사법 통합을 위한 특별법	문헌연구 사례분석	북한형사법 내용과 문제점 통일대비 북한형사법령 통합

3) 북한 법령연구는 법제처의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http://www.unilaw.go.kr/main.html>)에서 분야별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최근 형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 없다.

4) 주요연구로 신의기, 「통일대비 북한 범죄자 처리방안에 관한 연구」(서울: 형사정책연구원, 2015); 박학모, 「통일시대의 형사정책과 형사사법 통합연구」(서울: 형사정책연구원, 2016) 등이 있다.

예비연구」(형사정책연구원, 2008)	정비방안 연구		방안 검토
본 연구	북한의 제·개정 헌법 및 형법 배경을 이해하고, 법률 조문분석을 통해 김정은 체제의 내부상황을 이해	문헌연구 통계분석 사례조사	북한은 최소 24차례 이상 형법을 개정해 왔으므로, 각 조문의 변화과정을 추적 처벌조항의 신설 또는 폐지를 통해 북한의 내부 상황 유추

이 연구는 북한의 제정 형법에서부터 최근 개정된 형법에 이르기까지 법 개정의 정치적 배경과 각 조문의 내용을 시계열(time series analysis)로 비교·분석함으로써, 김정은 체제의 내구성과 사회상을 유추해 보고자 하는 점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 방식을 취하되, 통계조사와 사례분석 방법을 병행한다. 북한 법령을 분석함에 있어 일차적 한계는 우선 국내에 공개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북한은 남한과 달리 법령의 공포가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회주의권 국가에서는 체제유지와 관련된 법령의 상당부분이 비밀로 되어 있다. 중국의 경우,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하여도 정법(政法)은 비밀 내지 비밀전공으로 간주되어 이 분야에 외국인 유학생마저 받아들이기를 거부하였다. 북한은 이보다 더 철저히 각종 법령을 비밀로 관리하여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⁵⁾

이 연구의 근간이 되는 법령에 대해서는 「201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법전」, 「2015 최신 북한법령집」,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 「국회전자도서관」, 「북한자료센터」, 북한의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형사사법제도 일반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발간한 「북한법의 체계적 교찰(Ⅱ)」, 법원행정처의 「북한사법제도개관」 및 「북한의 형사법」, 통일연구원의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등을 참고 하였다. 또한 법률 제정과정에 대한 정보나 법률의 제·개정 취지 등에 관해서는 「정치법률연구」,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등의 자료를 통해 간접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5) 정기승, 「남북한 헌법의 이해」(서울: 삼광출판사, 2002), 10쪽.

본 연구의 범위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세습 체제 전 과정을 분석대상으로 삼되, 제2장에서는 형사법의 법원(法源)과 발전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북한의 제·개정 형법의 주요내용과 평가를, 제4장에서는 북한형법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그동안 24차례 이상 형법을 개정한 배경과 변화과정에 대해 개략적으로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Ⅱ. 북한 형사법 체계의 형성과 변천

제1절 사회주의 법이론과 체계

1. 사회주의 법개념과 법원(法源)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공산주의 사회에서 법은 존재할 여지가 없다. 그는 「공산당 선언」에서 “국가란 계급투쟁의 산물”로 간주하였고, 엥겔스는 「사유재산 및 국가의 기원」에서 “국가란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억압하기 위한 기구”로 규정했다. 즉, 국가란 부르주아계급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탄압하기 위한 기구이며, 법은 그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계급 없는 공산주의사회에 이르게 되면 국가와 법은 사라질 운명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기존에 존재했던 현실 사회주의 체제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법을 철저하게 이용하였다.

사회주의적 법 개념의 공식적인 출발점은 소비에트 법이론가인 비신스키(Vysinsky)에 의해서 주창되었다. 그는 “법은 행위규칙의 총체로서, 제정 법규범과 국가권력에 의하여 확인되고 강제적으로 보호되는 관습규범 및 공동생활 규범의 총체”로 보았다.⁶⁾

북한의 법이론가들은 전형적인 사회주의적 법 개념에서 출발하여 법을 통치의 강제적 수단의 하나인 “한 사회의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다스리기 위하여 사용하는 강제수단의 일종”으로 규정했다. 1945년 11월 16일 북조선 사법국 포고 제2호 「북조선에 시행될 법령에 관한 건」에 따

6) 김도균,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법치론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 서울대학교, 2005), 453쪽 재인용.

르면,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실시된 제반 악법과 규정은 영구히 효력을 상실하며, 새로운 국가건설과 조선인민의 이익에 배치되는 어떠한 질서 및 법도 허용될 수 없음을 선포했다. 따라서, “1945년 8월 15일 조선에서 그 효력을 상실할 법령 중 조선 신국가 건설 및 조선고유의 민정(民情)과 조리(條理)에 부합치 않는 법령 및 조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법령은 신법령을 반포할 때까지 각각 그 효력을 존속한다.”고 밝혔다.⁷⁾

북한은 “사회주의 법은 사회주의 국가의 출현과 함께 태어난 새 형의 법”으로 자기 규정하였다.⁸⁾ 그 이유에 대해 북한은,

“...사회주의 법은 노동계급의 국가인 사회주의 국가의 출현과 더불어 태어난 새 형의 법입니다. 그것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과 요구에 맞게 만들어지고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는데 복무하는 참다운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입니다....⁹⁾”

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북한에서 법이란 일본제국주의를 무찌르고 탄생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오직 노동계급의 이익을 철저히 보호하는데 법의 사명이 있음을 내외에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법의 개념 역시 “우리의 법은 당 정책을 표현한 것이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 위력(偉力)한 무기”로 정의하였다.¹⁰⁾

김일성은 “법은 정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치에 복종되어야 하며, 그것과 떨어질 수 없다.”¹¹⁾ 고 하여, ‘정치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표명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법학자들은 법과 정치에 대해 설명하기를,

7) 홍극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16쪽.

8) 장춘식, “사회주의적 준법의식의 형성발전 단계,” 「정치법률연구」 제4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36쪽.

9) 황금철, “공화국형벌량정의 본질적 특성,” 「정치법률연구」 제2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45쪽.

10) 정연수,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국가사회재산 보호관리를 잘 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 「사회과학」 1983년 제1호(1983), 60쪽.

11) 김일성,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김일성 저작집 12」(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221쪽.

“...정치실현에서 법은 떼어 놓을 수 없는 필수적 수단이다. 정치는 그 실현을 담보하는 일정한 수단에 의하여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 수 있다. 법이 정치의 실현수단이라는 것은 법이 국가주권을 장악한 계급의 정치적 요구의 실현을 목적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복무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²⁾

고 규정함으로써 김일성의 법 관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북한 형법의 사명은 “조선에 세워진 노동자·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며 혁명위업의 실현을 반대하는 반혁명 범죄자들을 진압하고, 사회주의제도의 공고한 발전에 지장을 주는 일반범죄자들을 제재할 목적으로 국가가 제정한 범죄 및 형벌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로 정의하고 있다.¹³⁾

북한의 법이론가들은 법의 원천이자, 존재형식으로서의 법원(法源)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는 헌법과 법령, 정령·결정·명령·지시 등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 관련 조약들도 형사법의 법원(法源)으로 인정하고 있다.¹⁴⁾ 다시말해 최고인민회의는 법령과 결정을, 국무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¹⁵⁾,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정령과 결정 및 지시를, 내각은 규정을, 내각 위원회와 내각은 지시를, 지방인민회의는 결정을, 지방인민위원회는 결정과 지시를 각각 제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령·결정·명령·지시 등의 내용이 상호 충돌하거나 모순될 때는 기관 상호간의 위계질서에 의해 결정된다.

12) 리창세, “공화국형사소송법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위력한 법적무기,” 『정치법률연구』 제 2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참조.

13) 김근식, 『형법학 1』(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6쪽.

14)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서울: 법원행정처, 2006), 17쪽.

15) 2013년 수정된 북한 헌법 제109조에 국방위원회의 임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3항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6년 개정 헌법에서는 이를 ‘국무위원장’으로 대체하였다.

〈표 II-1〉 제정기관에 따른 법령 제정 방식

기관	채택형식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제97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결정·지시(제120조)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제104조)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제110조)
내각	결정, 지시(제129조)
내각 위원회, 성	지시(제136조)
지방인민회의	결정(제144조)
지방인민위원회	결정, 지시(제150조)

반면 판례나 관습법은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과거 지배계급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인민의 의사가 반영된 입법부와 달리 사법부는 법을 적용하는 기관일 뿐, 법을 제정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한편 조리(條理)에 해당하는 정치적 도덕이념들이나 법의식은 법원(法源)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정권초기부터 성문법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인민의 이익, 민주적 법의식¹⁶⁾이라는 기준에 따라 법률을 제정하거나 제한해 왔기 때문이다.¹⁷⁾

그러한 점에서 서구식 기준으로 보자면 법과 도덕을 강력하게 연관시키고 있기 때문에 자연법적 전통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¹⁸⁾

모든 국가는 사회를 통제하는 독자적인 법·규범 체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헌법 제11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16) 법의식이란 법적 제문제에 관계되는 일정한 정치·사회적 이념과 원칙 또는 요구의 총체를 의미한다. 조일호, 「조선가족법」(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8), 45쪽.

17) 대륙연구소 편, 「북한법령집」 제1권(서울: 대륙연구소, 1990), 181쪽.

18) 김도균,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법치론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서울: 서울대학교, 2005), 463-464쪽.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하여 당 규약의 하위 규범임을 적시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법은 과도한 법원리주의(Prinzipientheorie des Rechts) 즉, 정책적 판단에 따라 법이 복속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¹⁹⁾ 모든 법규들과 재판의 배경규범으로서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교시와 말씀을 열거하는 전거주의적(典據主義的)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정권 초기부터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인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했다.²⁰⁾ 그 이유는 소비에트연방공화국 1926년 형법 제16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본 조는 “어떠한 사회적 위험행위가 이 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의 근거와 범위 및 사회방위 처분은 그 행위의 성질상 가장 근사한 범죄를 규정한 본 법전의 조항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여 ‘유추적용’을 전면적으로 허용하였다. 유추해석 규정은 1960년 소련 형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고,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등장하였다.²¹⁾

북한 역시 2004년에 이르면 ‘죄형법정주의’를 획기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유추해석을 규정한 1999년 형법 제10조를 삭제하는 대신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19) 법원리주의란 “법체계를 확정적 법규범과 법원리 규범으로 구성된 체계로 파악”하며, 법원리의 주요형태와 근원은 “개인의 권리를 정당화하는 가치들 및 이념, 정치적 공동체의 운영과 작동에 관련된 가치들, 사회경제적 정책을 정당화하는 가치들 및 이념” 등이다. 김도균,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 문제,” 『법학』 제48권 제2호(서울: 서울대학교, 2007), 37쪽.

20) 죄형법정주의란 법률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하고서는 그리고 준수되어야 할 법률에 규정한 형태에 의하지 않고는 누구도 고발, 체포, 구금되지 않는다. 그러나,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채택에 관하여’ 제9조에서 “범죄적 행위로서 그에 직접 해당하는 규정이 본 법에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본 법 중 그 중요성과 종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항에 준거하여 그 책임의 기초와 범죄 및 형벌을 정한다.”고 규정했다.

21) 중국도 개혁·개방 이전에는 죄형법정주의를 부정했으나, 1997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범죄행위는 법률에 의해 규정하고, 법률에 의해 죄를 정하며 형에 처한다. 범죄행위에 대한 법률의 명문 규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정하거나 형에 처할 수 없다.”(형법 제3조)고 규정함으로써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을 금지하고 있다.

(형법 제6조)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그러나, 죄형법정주의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와 노동당의 지시를 초법적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실질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2. 1948년 헌법과 개정사

북한 헌법은 1948년 9월 8일 제정된 이래 2016년 6월 29일 까지 모두 13차례 개정을 단행해 왔다. 북한의 헌법 제정 작업은 1947년 11월 19일 제3차 북조선인민회의에서 김두봉의 제안으로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 조직에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고, 김일성과 김두봉을 포함하여 31명으로 구성된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만들면서 구체화 되었다.²²⁾

1948년 제정 헌법은 주요내용과 절차를 모스크바 당국과 긴밀한 협의 하에 정하였다. 북한은 북조선인민위원회 제3차 회의(1947.11.18)에서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기구로 이른바 ‘조선임시헌법제정위원회’를 조직하였다. 同 위원회에서는 ‘법전초안작성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초안을 작성, ‘인민회의특별회의’(1948.04.18)에서 심의·통과되어 同年 9월 7일 북조선인민회의 제5차 회의를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공표되었다.²³⁾

그리고 법전초안위원회는 형법의 제정 작업을 진행하였는바, 1948년 3월 9일 그 초안이 완성되어 同 위원회에 보고되었다. 형법 초안은 그동

22) 김형성·조재현, “북한헌법 변화의 특징과 전망,” 『성균관법학』 제24권 2호(서울: 성균관대학교, 2012), 12쪽.

23) 1948년 헌법은 1972년 사회주의헌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총 5차례의 수정이 이뤄졌다. 제1차 수정은 1954년 4월 23일 헌법 제37조 8호를 수정하여 면(面)을 폐지하였고, 제2차 수정은 1954년 10월 30일 헌법 제5장의 조문과 제36조에서 인민회의 대의원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였다. 제3차 수정은 1955년 3월 11일 지방정권기관의 권한 변경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조항 및 내각구성 조항을 수정했다. 제4차 수정은 1956년 11월 7일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수정했으며, 제5차 수정은 1962년 10월 18일 헌법 제35조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출 인구 하한선을 5만명당 1명에서 3만명당 1명으로 수정하였다.

안의 단편적인 형사법령을 통합하는 한편, 소련의 1926년 스탈린 형법을 모방한 것으로서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5차 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채택에 관하여」라는 명칭으로 채택되었으며, 1950년 4월 1일자로 시행되었다.²⁴⁾

1948년 제헌헌법은 제2조에서 “주권은 인민에게 있고, 최고주권기관은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5조와 제6조에 의거하여 일본인 또는 친일분자의 소유 및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는 몰수하며,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할 것을 선언하였다. 헌법 제61조에 따라 수상과 부수상은 최고인민회의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할 것을 명시하였다.

“나는 조선인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충실히 복무하며 각원으로서의 자기활동에 있어서 오직 전체인민과 국가의 복리를 위하여 투쟁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과 법령을 엄중히 준수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보호하는데 자기의 모든 역량과 기능을 다할 것을 선서한다.”

북한 제헌 헌법은 별도로 형법에 관해 언급하지 않고, 제6장(제82~제94조)은 재판소 및 검찰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최고인민회의는 최고재판소를 선거(제83조)하고, 최고검찰소의 검사총장을 임명(제92조)하며, 검사는 헌법·법령·정령 및 내각의 결정·지시와 지방주권기관의 결정에 따라 법을 집행(제91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북한 헌법의 전면적 수정은 김일성 주체사상의 창설과 더불어 1972년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 회의(1972.12.27)에서 사회주의 헌법이 채택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하여 정치상황 변화에 따라 1992년, 1998년 2012년에 의미 있는 개정 작업이 이뤄졌고, 최근에는 김정은 정권의 안착과 더불어 2016년 6월에 개정되었다.

24) 오세인, “북한 형법체제의 특수연구.”(서울: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2004), 42-43쪽.

1972년 헌법은 오늘날 북한체제의 근간이 되는 ‘맑스-레닌주의’(제4조)의 천명과 함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제5조), ‘적대분자들의 파괴책동으로부터 사회주의 제도의 보위’(제11조),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제49조) 등을 명문화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 ‘제10장 재판소 및 검찰소’(제133조~제145조) 규정에서는 이전의 제헌헌법과 달리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기능을 강화하였는데, 그 요체는 “계급적 원수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에 대한 투쟁과 “사회주의제도를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할 것을 주요 임무로 규정했다.

1992년 4월 9일 수정·보충된 헌법에서는 맑스-레닌주의를 삭제하는 대신, ‘국방위원회’(제111조~123조)를 신설하고, 1998년 9월 5일 개정된 헌법에서는 헌법 서문을 삽입하여 ‘김일성헌법’으로 명명하고, 2012년 4월 13일 수정 헌법에서는 ‘김일성-김정일헌법’으로 개칭하였다.²⁵⁾ 한편, 검찰소의 임무를 확대하여(제156조),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가 헌법, 최고인민회의 법령, 결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결정, 지시, 내각 결정, 지시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감시한다....”

로 수정하였다. 최근에는 김정은 정권의 안착과 궤를 같이하여 2016년 6월에 일부 조문이 개정되었는데, 그 핵심은 김정은을 김일성 시대 주석제와 유사한 국무위원장이란 직책을 신설함으로써, 권한을 강화하는데 집중했다.

25) 리명일, “우리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김정일헌법,” 『정치법률연구』 제4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41쪽.

〈표 II-2〉 헌법 개정 주요내용

구 헌 법(2012.4.13.)	신 헌 법(2016.6.29.)
<p>서문 :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시며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나갈 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p>서문 : 일부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조선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여 나갈 것이다.”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과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헌법이다.”
<p>제100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p>제100조 국무위원회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이다.
<p>제102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p>제102조 국무위원회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사령관이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
<p>제103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p>제103조 국무위원회 위원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 “7. 전시에 국가방위원회를 조직지도한다.”

<p>제109조 국방위원회 임무와 권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4.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p>제109조 국방위원회 임무와 권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집행정형을 감독하고 대책을 세운다.” ➔ “3.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국무위원회 결정, 지시에 어긋나는 국가기관의 결정, 지시를 폐지한다.”
---	---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2016년 수정 헌법 103조에 따라 ‘국가의 전반사업 지도,’ ‘중요간부 임명 및 해임,’ ‘중요 조약 비준 및 폐기,’ ‘특사권,’ ‘전시 국가방위위원회 조직지도,’ ‘비상·전시상태 및 동원령 선포’ 등의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이 밖에도 舊헌법 123조 “내각은 최고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이 수정헌법에서는 “국가주권의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에서 법안 제출권은 최고주권기관의 상설기관과 부문위원회 대의원에게 부여되며, 국가수반과 정부(중앙행정기관)에 부여된다. 또한 중앙검찰기관과 중앙재판기관, 일부 지방주권기관, 사회단체에 부여되기도 한다.²⁶⁾ 1948년 헌법과 1972년 사회주의 헌법에서는 최고인민회의만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고주권기관만이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법적 규제를 제때에 보장할 수 없으며, 상설기관을 두는 의의도 약화될 수 있으므로 1992년 사회주의헌법을 수정·보충하면서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북한헌법이 수정되거나 보충될 경우, 어김없이 형법의 내용 또한 수정되고 있다. 1950년 제정된 북한형법은 이후, 1974년, 1987년, 1995년, 1999년, 2004년, 2007년, 2009년 2012년, 2015년 등 거의 매년 변화된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여 수정·보충되어 왔다.

26) “사회주의국가의 립법절차에 대한 일반적 리해,”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05년 2월호.

제2절 형사법의 체계와 발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법은 서로 다른 법제도의 계통으로부터 구별되는 유사성과 상이성에 근거하여 법계(法系)를 구분하고 있다. 법계의 구분은 관점에 따라 여러 형태로 구분이 가능하나, 크게 보면 자본주의 법계와 사회주의 법계로 대별할 수 있다. 북한법은 사회주의 법계에 속하면서도 북한 특유의 주체사상에 입각한 법문화 및 법이론을 형성한다.²⁷⁾ 다시말해 대륙법계의 사회주의법이 갖는 성격, 주체사상의 구현, 동양적 법문화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이다.²⁸⁾

북한의 법체계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교시를 최고 상위규범으로 삼고 있다. 북한의 형사법 또한 ‘교시 → 노동당규약 → 헌법 → 형사법령’의 순서로 정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공화국 헌법의 유일한 지도사상, 지도적 지침은 위대한 수령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라고 밝히고,²⁹⁾ 자신들의 법이론은 주체의 법이론이고, 이는 김일성이 창시하고 김정일이 발전·풍부화시킨 독창적인 법이론이라 주장하고 있다.³⁰⁾

일반적으로 형사법이라 함은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형사실체법과 형사실체법에 정해진 형벌의 구체적 실현절차를 규정한 형사절차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³¹⁾ 북한은 형식적이거나 헌법에서 규정하는 형사법의 기본원리를 형법과 형사소송법에서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형사법령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직접적으로 범죄와 형벌에 관한 실체

27)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서울: 법원행정처, 2006), 9쪽.

28) 윤대규, “북한사회에서의 법의 성격,” 「북한법연구」 제6호,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3), 21쪽.

29) 김근식, 「형법학 1」(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3쪽.

30)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7쪽.

31) 형사법이란 ‘범죄 및 형벌과 관련된 법규범의 총체’로 정의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형사법에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외에도 노동당규약 및 형사 관련 성문법 일체를 포함한다.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서울: 법원행정처, 2006), 16쪽.

법과 절차법을 구성하고 있고, 재판소구성법, 판결·판정집행법, 변호사법, 검찰감시법, 형민사감정법 등이 재판제도와 형의 집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³²⁾ 그러나, 기실 북한의 현실은 최고 규범력을 가진 김일성 주체사상을 정점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선노동당 규약과 헌법, 그리고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형사법령, 형사사건 처리에 관한 각종 정령·결정·명령·규정·지시 등에 의해 규율된다.³³⁾

북한에서 형법은 “지배계급의 계급적 의사와 리해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하여 철두철미 계급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한다.³⁴⁾ 북한의 정치사전에서는,

“...공화국 형법은 우리 사회주의법의 중요한 구성부분의 하나이다. 공화국 형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법률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당 사법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의 하나로서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절대다수의 근로인민들의 리익을 옹호하며 소수 적대분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독재를 실시하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무기이다. 공화국 형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권과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와 사회주의전취물을 원썩들의 온갖 침해로부터 보위한다. ...”³⁵⁾

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형사법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서 사회의 주체사상화에 적극 이바지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따라서 북한에서 법이란 “계급투쟁과 사회주의 국가관리의 수단”이고, “혁명에서 싸워 이겨 얻은 전취물을 지키기 위한 무기”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³⁶⁾

김일성 시대의 북한 법률체계는 소련 법제의 모방 및 항일혁명의 전통

32) 이효원, “북한의 형사법과 형집행제도,” 『한국행정학회 비정기학술발표논문집』 (서울:한국행정학회, 2009), 37쪽.

33) 북한 형사소송법은 1950년 3월 3일 총 25장 281개조로 제정되어 1999년 제8차 개정을 통해 전면 개정된 이후 2005년 7월 26일 총12장 43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34)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67쪽.

35)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1249쪽.

36) 법무부,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서울: 법무부, 2005), 1쪽.

과 계급투쟁론, 그리고 반대파와의 권력투쟁의 경험에 입각하여 헌법을 포함, 부문별 법제를 제정 및 정비하였다. 여기에 더해 1960년대 중반 중국과 소련간의 갈등이 심화되자, 약소국이 취할 수밖에 없는 숙명적 외교노선인 중립외교 정책을 강조하였고, 이는 자주성의 강조로 나타났다. 따라서 김일성이 강조한 주체사상은 약소민족에게는 생존의 방식이자 저항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한 점에서 각 분야별 법제 정비 방향은 ‘주체사상’이란 프로파간다(Propaganda)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정비되었다.

김일성의 권력을 이어받은 김정일도 1992년 헌법개정을 통해 사회주의법무생활의 강화에 관한 조항(제18조제3항)을 신설함으로써 김일성의 법관념과³⁷⁾ 혁명전통에 따라 사회주의 법률체도를 정비하였다. 김정일은 “우리 당은 집권당이며, 우리 국가의 법은 곧 우리 당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것입니다.”고 언급하였다. 김경현은 이에 대해 도구주의적 국가관 즉, “정치조직인 국가는 당의 노선과 정책을 법으로 전환시켜 권력적 담보 밑에 그것을 전 사회적으로 집행하는 방법으로 정치를 실현한다.”고 설명하였다.³⁸⁾

김정일은 체제보위 및 강화를 위해 사회주의 법제사업을 실천에 옮겼다. 사회주의 법제사업이란 “새로운 법규범을 창설하고,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여 수정·보충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한다.³⁹⁾ 북한에서 법규범의 수정은 개별 법규범이나 법문구를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충은 새로운 법조문이나 법문구를 첨부하는 것을 가리킨다. 북한에서 수정의 예로는 1992년과 1998년 사회주의헌법

37) 김정일은 “법에 대한 옳은 이해를 가지려면 법을 정치와의 관련 속에서 보아야 합니다. 정치를 떠나서는 법에 대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법은 정치의 한 표현형식이며, 실현 수단입니다.”고 하여 김일성의 사고를 이어받고 있다.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법학 3』(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21쪽.

38) 김경현, “공화국행정법률제도는 당의 노선과 정책집행의 위력한 법적무기”, 『정치법률연구』 제2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44쪽.

39) 『김일성저작집』 제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217-218쪽.

등을 들고 있고, 수정·보충의 예로는 1995년 형법과 1996년 형사소송법을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⁴⁰⁾

북한은 형사소송법에 대해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를 보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고 전제하고, 그 뿌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전통과 조국광복회 10대 강령에 근원을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⁴¹⁾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1950년 3월 제정된 이래, 형법의 개정에 맞춰 지금까지 꾸준히 개정되어 왔다. 2012년 수정·보충된 형사소송법은 8장 4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에서 신설된 조항으로는 제32조(증거의 수집, 리용) 2항이 있으며,⁴²⁾ 그 이후 개정된 사항은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2015년에 형법이 일부 수정·보충되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이미 개정되었거나 아니면 조만간 내용의 일부가 수정·보충될 가능성이 크다.

〈표 II-3〉 형사소송법 개정사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회의에서 채택
1954년	6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수정·보충
1976년	1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수정·보충
1992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채택
1995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9호로 수정·보충
1996년	1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7호로 수정·보충
1997년	9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5호로 수정·보충
1999년	9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96호로 수정·보충
2004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6호로 수정·보충
2005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5호로 수정·보충
2006년	10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5호로 수정·보충
2011년	10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3호로 수정·보충
2012년	5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87호로 수정·보충

40) 박정원,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분석,” 『법학논업』 제26권 제2호(2013), 222-223쪽.

41)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평양: 평양종합인쇄공장, 1973), 1249쪽.

42) “해당 법기관은 군인, 종업원들이 사회에 나와 저지른 일반범죄사건을 취급 처리하기 위한 인민보안, 검찰기관의 수사, 예심과 재판소의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북한 법제의 기능과 역할은 첫째, 계급적 원수들의 반항을 진압하고, 둘째 사회주의 국가를 옹호 관리·운영해 나가기 위한 통제를 의미하며, 셋째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촉진하고, 넷째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개발하여 국가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확립을 목표⁴³⁾로 하였다.

김정은은 김일성과 김정일의 보다 취약한 권위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법제 정비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시말해 법을 규제력 있게 만들어 규범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으며, 법제정 사업을 개선하고 사회주의 법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려고 시도 중이다.⁴⁴⁾

그 예가 바로 2012년에 채택된 「공화국법제정법」이다. 이는 자신들이 밝힌 것처럼 “법을 이루는 무수한 법규범들은 각이한 시기에 각이한 국가기관에 의하여 각이한 법문건의 형식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하여 법문건들과 법규범들 사이에는 모순과 저촉, 불일치가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저촉과 불일치를 제때에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체계의 통일을 보장할 수 없으며 법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그 동안 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있다.⁴⁵⁾ 북한은 「공화국법제정법」의 입법취지에 대해,

“...법을 이루는 무수한 법규범들은 각이한 시기에 각이한 국가기관에 의하여 각이한 법문건의 형식으로 제정되는 것으로 하여 법문건들과 법규범들 사이에는 모순과 저촉, 불일치가 생겨나게 된다. 이러한 저촉과 불일치를 제때에 적절하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법체계의 통일을 보장할 수 없으며 법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없다. 2012년 12월 19일 채택된 공화국 법제정법에 의하여 법의 효력순위, 효력관계가 명백히 규제됨으로써 법문건과 법규범들 사이의 저촉과 불일치가 해결될 수 있게 되었다. 공화국법제정법에서는 무엇보다도 법문건들 사이의 효력순위에 대하여 규제하였다...”⁴⁶⁾

43) 법제처, 「북한법 개요」(서울: 법제처, 1991), 7쪽.

44) 손희두, 「북한 법이념의 변화와 남북한 법제협력」(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4), 136쪽.

45) 허경일, “공화국 법제정법에 규제된 법의 효력순위와 효력관계”, 「정치법률연구」 루게 제43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35쪽.

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 입법을 통한 법제 사업의 취지는 첫째, 법을 철저히 행동준칙으로 만드는 것이다. 법조문에서 법적 권리와 의무, 법적 제재, 법적 권리의무의 당사자와 대상, 법률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제재규범을 구체화 시키고 있다. 이는 위법행위의 각종 형태, 법적 책임의 종류와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국가기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대상 등에 대하여 빠짐 없이 규정함으로써, 위법행위의 형태와 정상에 따라 그에 대응되는 법적 책임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는 것이다. 셋째, 부문기본법들을 만들고 그에 기초하여 부속되는 법과 규정, 세칙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부문법 체계를 완비해 나가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은은 법적 관계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형식적 차원에서 헌법과 부문법의 관계 및 효력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헌법은 최고의 법적효력을 가지며, 부문법의 효력은 규정, 세칙보다 높다. 규정은 부문법을 제정할 조건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부문에서 법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실무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형식이고, 세칙은 부문법이나 규정을 일정한 부문이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법형식으로서 내각위원회, 성이나 도(직할시) 인민회의 및 인민위원회가 성안하는 법형식이다. 만약 동급의 법문건들 사이의 모순과 저촉이 발생된다면, 효력순위는 후법우월의 원리와 특별법우선의 원리가 적용된다...”⁴⁷⁾

김정은 시대 북한 법제 정비의 방향은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승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을 겸비한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골간이 되라!.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 보게 하라!”로 축약할 수 있다.⁴⁸⁾ 이 구호는 오늘날 북한이 세

46) 허경일, “앞의 글,” 35쪽.

47) 허경일, “앞의 글,” 35-36쪽.

계를 상대하는 마음가짐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입법과 관련된 주요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권력구조 재편에 따라 헌법이 자주 수정·보충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의 집권과 궤를 같이 하여, 2009년 4월 헌법을 대폭 개정한 이래로 2010년 4월, 2012년 4월, 2013년 4월, 2016년 6월에 각각 헌법을 개정한바 있다.

둘째, 국제사회로부터 북한 인권문제가 부각되자 인권관련 내용을 보장하였다. 2009년 수정 헌법을 통해 처음으로 ‘인권존중과 보호’를 명시하였다. 북한 헌법 제8조 제2항에서 “근로인민의 리익을 옹호하며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법규 제정만으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 북한 당국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⁴⁹⁾

셋째, 김정일의 선군정치 사상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명시하였다. 선군사상에 대해 2009년 헌법에서는 “주체사상과 함께 자기 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고 천명하였으나, 2016년 헌법서문에서는 사회주의 헌법은 국가건설 및 국가건설업적을 법화한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규정하였다.

넷째,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한 사회통제와 탈북자 단속이 강화되었다. 2009년 형법에서 형벌의 종류에 벌금형을 추가하였고,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위반자에게 부가형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력교체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북한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점차 강화시켰으며, 2012년 장성택 처형 이후부터는 공포정치를 실시하고 있다.

다섯째, 북한주민에 대한 사상교육 및 사상통제를 강화하였다. 그 일환으로 북한은 2013년 6월 ‘당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을 개정한바 있다.⁵⁰⁾ 10대 원칙은 헌법이나 당규약보다 상위에서 작동하며, 김

48) “자기 땅에 바를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보라”, 「노동신문」, 2010년 9월 1일.

49) 이규창, “김정은 시대의 북한법제 동향: 특징과 향후 전망,” 「통일과 법률」, 제17호(2014. 1), 13쪽.

정은의 유일독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통치규범으로 김일성 생가의 권위를 신격화·우상화하고, 정치적 반대세력 또는 불만세력의 출현을 차단하기 위해 감시와 탄압을 통해 김일성 일가의 권력세습을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⁵¹⁾

50) 김정은은 2013년 6월 19일 노동당과 군, 내각 등의 고위간부들을 모아놓고 유일영도체계 확립에 대해 직접 연설을 하였으며, 조선노동당출판사는 연설 내용을 묶어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발간하였다.

51) 이규창, “앞의 글”, 18쪽.

Ⅲ. 북한의 제·개정 형법 내용 분석

제1절 형법 제·개정 경과

1. 제정 형법

북한은 해방이후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권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1945년 11월 6일 북조선 사법국 포고 제2호로 「조선에서 시행해야 할 법령에 관한 건」이라는 법률을 공포하여 일제 식민지법의 폐지를 선언하는 한편, 각 지방의 공산정권인 인민위원회에서 일정한 법률적인 기준도 없이 이른바 ‘혁명적 법의식’에 따라 인민재판으로 범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⁵²⁾

또한, 북한 정권은 「친일파, 민족반역자에 대한 규정», 「조세체납 처벌에 관한 건», 「북조선 토지개혁에 관한 법령」 등 단편적인 형사법규의 제정을 통하여 정권수립 초기 장애요인들을 제거해 나갔으며, 법전초안 작성위원회에서 형법초안을 작성 한 후, 1950년 3월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채택에 관하여」라는 명칭으로 북한형법을 채택하여, 1950년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1950년에 제정된 북한형법은 종전의 개별적 형사법령의 형태를 탈피한 최초의 통일된 법전이며, 이로써 형사처벌의 범위와 내용 등에 대한 통일화·체계화를 이룰 수 있었다. 제정 형법은 제1편 총칙 12개장과 제2편 각칙 11개장의 총2편 23장 301조로 구성되어 있다. 총칙에서는 제1장 형법의 과업·목적·효력한계 등에 관한 일반규정, 제2장 범죄개념·근

52) 법원행정처, 앞의 책, 56쪽.

거, 책임무능력, 긴급피난 등에 관한 형사정책의 일반원칙, 제3장 예비·미수, 제4장 공범, 제5장 형벌, 제6장 형벌의 적용절차, 제7장 범죄의 병합, 제8장 집행유예, 제9장 만기전 석방, 제10장 형사소추시효, 제11장 사면, 제12장 전과의 소멸 등이 규정되어 있다.⁵³⁾

〈표 III-1〉 북한의 제정 형법 체계

제1편 총칙	제2편 각 칙
제1장 일반적 규정 (제1조~제6조)	제13장 국가주권침해에 관한 죄(제64조~제81조)
제2장 형사정책의 일반원칙 (제7조~제17조)	제14장 국가권리침해에 관한 죄(제82조~제102조)
제3장 예비와 미수 (제18조~제21조)	제15장 국가소유·사회 및 협동단체소유 침해에 관한 죄(제103조~제111조)
제4장 공범 (제22조~제26조)	제16장 인신침해에 관한 죄(제112조~제146조)
제5장 형벌 (제27조~제45조)	제17장 공민의 재산침해에 관한 죄(제147조~제167조)
제6장 형벌의 적용절차 (제46조~제49조)	제18장 노동법령위반에 관한 죄(제168조~제177조)
제7장 범죄의 병합 (제50조~제52조)	제19장 공무상 범죄(제178조~제193조)
제8장 집행유예 (제53조~제55조)	제20장 경제에 관한 죄(제194조~제217조)
제9장 만기전 석방 (제56조~제58조)	제21장 관리질서침해에 관한 죄(제218조~제258조)
제10장 형사소추의 시효 (제59조~제60조)	제22장 사회적 안전 및 인민보건침해에 관한 죄(제259조~제264조)
제11장 사면 (제61조)	제23장 군사상범죄(제265조~제310조)
제12장 전과의 소멸 (제62조~제63조)	

53) 법원행정처, 앞의 책, 66쪽.

북한은 제정 형법의 임무에 관하여 제1조에 “형법은 죄를 범한 자에게 본법에 규정한 형벌을 적용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범죄행위로부터 보위하는 것을 과업으로 한다.”⁵⁴⁾고 규정함으로써 정치·형법적인 성격을 시초부터 보유했다.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행위시법주의(行爲時法主義)와⁵⁵⁾ 행위자에게 유리한 소급적용을 규정하고, 제17조에서는 “8·15 해방 이전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그 행위의 성질이 북한에 대해 사회적으로 위험성이 없을 때에는 범죄로서 소추할 수 없다.”고 하는 경과조치를 두었다.

형벌의 종류로는 기본형으로 사형, 징역, 교화노동형을 규정하고, 부가형벌로 벌금, 일정한 권리박탈, 일정한 직업 또는 영업의 금지, 일부 또는 전부의 재산몰수 등 7가지 형벌을 규정했다.⁵⁶⁾ 징역형의 기간은 1년에서 20년까지이며, 일정한 구금소나 특별노동수용소에 수용된다. 교화노동형은 지정된 장소 또는 기존근무 직장에서 노동에 종사하는 대신 노동보수 중 일부를 국가에 납부시키며 기간은 1일 이상 1년 이내로 한다. 권리박탈형은 선거권과 사회단체 피선거권, 국가 직위에 취임하는 권리 및 친권과 사회보장 절차에 따른 연금·보조금 등을 받을 권리가 제한된다. 특별히 형법 제70조는 “탈주한 군무자의 가족 중 그와의 동거 성년 가족에 대해서는 선거권을 박탈하고 5년간 원격지로 추방한다.”고 규정하여 연대책임 조항을 두었다.

북한 제정 형법은 국가주권주의적 색채를 강하게 띠고 있다. 즉 ‘국가주권 적대에 관한 죄’, 이외의 범죄들도 직·간접적으로 국가권력에 대한 침해로 간주되어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적대행위로 취급하였다. ‘국가주권 적대에 관한 죄’로는 반국가목적 무장폭동죄 등을 포함하여 18개 조문으로 구성돼 있고, 제14장 ‘국가관리침해에 관한 죄’는 모두 21개 조

54) 사법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평양: 사법성 사법출판부, 1950), 22쪽.

55) 행위시법주의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며, “사후입법에 의한 처벌 및 형의 가중을 금지”는 소급적용금지 원칙을 의미한다.

56) 1950년 북한형법 제28조~제44조.

문으로 나열돼 있다. 제15장 ‘국가소유·사회협동단체소유 침해에 관한 죄’는 9개 조문, 제16장 ‘인신침해에 관한 죄’는 35개 조문, 제17장 ‘국민의 재산침해에 관한 죄’는 21개 조문, 제18장 ‘노동법령 위반에 관한 죄’는 10개 조문, 제19장 ‘공무상 범죄’는 16개 조문으로 각각 이루어졌다. 제20장 ‘경제에 관한 죄’는 24개 조문, 제21장 ‘관리질서침해에 관한 죄’는 41개 조문, 제22장 ‘사회안전 및 인민보건 침해에 관한 죄’는 6개 조문으로 나열돼 있다. 끝으로 제23장 ‘군사상 범죄’는 모두 37개 조문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제정 형법에 제시된 총칙과 각칙의 범죄유형은 전술하였듯이 소련 형법을 참조한 것이다. 북한 형법학자 심현상은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5차 회의는 기왕의 개별적 입법과 실무들의 고귀한 경험을 일반화하며, 선진 소련의 입법과 실무들을 참작하여 내각이 제출한 형법전 초안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으로 채택하였다.”⁵⁷⁾고 고백하고 있다.

그렇다면 스탈린 형법을 모방한 조항으로는 형법 제1조 ‘형법의 과업’, 제7조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 제8조 ‘사회적 위험성의 예외 조항’, 제9조 ‘범죄의 예비와 미수’, 제22조 ‘범죄자, 교수자 처벌’, 제28조 ‘형벌의 종류’ 등은 그대로 배겼다고 볼 수 있다.⁵⁸⁾ 여하튼 제정 북한 형법은 형벌의 목적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으며, 국가와 법질서의 방위를 최우선적 과업으로 설정하고 있고, 사회적 위험성을 범죄개념의 핵심적 징표로 삼고 있으며, 형법 각칙상 국가의 정치·경제적 침해를 매우 중시하여 엄하게 다스린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57) 심현상, 「조선형법해설」(평양: 국립출판사, 1957), 51쪽.

58) 오세인, “북한 형법체제의 특수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48쪽.

2. 형법 개정사

1950년 제정된 형법은 북한 정권의 통치이념 변화에 따라 질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겪어왔다. 1974년, 1987년, 1990년, 1995년, 1999년, 2012년, 2015년에 걸쳐 수정·보충하였고, 내용면에서도 변화된 정치·경제·사회적 상황을 반영하였다.

〈표 Ⅲ-2〉 북한 형법의 제·개정 경과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 회의에서 채택
1974년	12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수정·보충
1987년	2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호로 채택
1990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호로 수정·보충
1995년	3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54호로 수정·보충
1999년	8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3호로 수정
2004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2호로 수정·보충
2005년	4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4호로 수정·보충
2005년	7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25호로 수정·보충
2006년	4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3호로 수정·보충
2006년	10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35호로 수정·보충
2007년	6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280호로 수정·보충
2007년	10월 1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03호로 수정·보충
2008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27호로 수정·보충
2008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89호로 수정·보충
2009년	4월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27호로 수정·보충
2009년	7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158호로 수정·보충
2009년	10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66호로 수정·보충
2010년	10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05호로 수정·보충
2011년	6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94호로 수정·보충
2012년	4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46호로 수정·보충
2012년	5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87호로 수정·보충
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8호로 수정·보충

북한은 자신들의 형법이 이렇게 자주 개정되는 이유에 대해,

“...형법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 사회경제제도와 정치제도, 계급투쟁의 내용이 변하면 그 반영인 형법규범도 변하지 않을 수 없다. 형법발전의 객관적인 사회적 조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정치제도이다. ... 형법은 정치의 요구를 체현하고 정치질서의 공고발전을 목적으로 하여 마련된다. 더욱이 형법은 정치적 권력에 의하여 직접 만들어지고 정치적 지배질서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복무하기 때문에 형법의 변화발전은 정치제도의 변화에 직접 의존한다...”⁵⁹⁾

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정치제도 변화를 형법 변화의 최우선 조건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다.

가) 1972년 개정형법

1972년 사회주의 헌법의 제정에 따라 형법 또한 김일성의 권력 강화를 위해 1974년에 개정되었다. '74년 개정 형법은 5편 17장 215개 조문으로 구성되었고, '형사정책의 기본'이라는 편을 새로 신설하여 “당의 형사정책을 집행하는 무기로서의 형법의 사명에 대해 규정”하고, ‘범죄 및 형벌에 관한 일반원칙’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형법 각칙에 여러 범죄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전 형법과 달리 반혁명 범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정하였다.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반대하는 반혁명 범죄’(제51조~제62조), ‘조선민족해방 투쟁을 반대하는 반혁명 범죄’(제63조~제64조), ‘반혁명범죄와의 투쟁을 방해하는 범죄’(제65조~제66조) 등이 그것이다. 이외,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하는 범죄’(제67조~제110조),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하는 범죄’(제111조~제117조), ‘국가의 행정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제118조~제148조), ‘사회주의적 공

59) 최동진, “형법에 대한 일반적 이해,” 『정치법률연구』 제20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참조.

동생활질서를 침해하는 범죄’(제149조~제159조) 등으로 나누어 규정하였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거나 조선공민을 침해하는 죄를 범한 국외범에 대해서도 북한형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형법의 임무(제4조)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의 임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보위하고 공화국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 실천하며, 모든 범법적 침해로부터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 제도와 질서를 세워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범에 기여하는데 있다.”

고 하여, 형법의 목적이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와 프롤레타리아 독재체제를 뒷받침하는 법적 무기라는 점을 명백히 하였다.⁶⁰⁾ 아울러,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강화하기 위해 반혁명범죄 및 일반범죄와 투쟁하는데 필요한 계급쟁의 무기로서 형법의 채택과 함께 형사소송법(1974.12.19) 및 재판소구성법(1976.1.10)을 각각 개정하였다.

나) 1987년 개정형법

1987년 형법 개정은 김일성이 제시한 주체적 법사상이 김정일의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로 정식화되고,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강했던 형법 제4조를 변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⁶¹⁾ 1974년 형법과 달리 '87년 형법은 편(篇) 구분을 없애고, 8장 161조로 조문을 단순화시켰다.

60) 김규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형사법제」(일본: 사회평론, 1988), 125~126쪽.

61) '87년 개정 형법이 외부에 알려진 것은 1991년 7월 국제사면위원회와 남북회담 과정에서 우리측이 북한형법의 반민주성·반인권성을 지적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은 '74년 형법은 '87년에 개정되었다고 반박하면서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개정 형법 제4조에서 형법의 임무를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로 수정하였으며, ‘반혁명범죄’를 ‘반국가적 범죄’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문수도 16개 조문에서 12개 조문으로 축소하였다. 국제사회를 의식하여 법정형도 상당히 완화되었다.

1974년 형법에 규정된 ‘군인의 조국반역죄’(제53조), ‘무장침입죄’(제57조)는 삭제했으나, ‘반혁명암해죄’(제59조), ‘반혁명과괴죄’(제60조), ‘반혁명적 태업죄’(제61조) 등은 통합하여 ‘반국가적 과괴암해죄’(제50조)란 명칭으로 새로 규정하였으며,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제51조)를 신설하였다. 그 외 일반범죄의 경우, 종전의 체제를 가급적 유지하되 8개 조문을 삭제했다.

형법 제2조에서 “국가는 범죄와의 투쟁에서 노동계급적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 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 제재를 배합한다.”고 적시함으로써 형사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였다. 반면, 반혁명범죄에 관한 명칭을 삭제함으로써 종래의 일반범죄에 관한 형사정책의 기본노선만을 제시하였다.⁶²⁾ 다만, 형법 제9조에서 “범죄는 국가주권과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하는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로 규정하여, 범죄 개념의 본질적 요소를 위법성과 위험성으로 본 1974년 형법을 그대로 계승하였다.

이러한 형법 개정에 대해 김정일은 김일성의 교시에 근거하여 형벌의 목적을,

“첫째로 반국가범죄자들이 더는 반항할 수 없도록 철저히 진압하는 것이다. 둘째로 일반범죄자들을 제재과정을 통하여 교양개조함으로써 그들을 범죄의 길에서 건져내고 사회주의 근로자의 대렬에 서게 하는 것이다. 셋째로 범죄자들에

62) 형사정책의 기본원칙에 해당하는 제3조를 신설하였는바, “국가는 모든 공민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고 규정하였다.

게 형벌을 적용하는 과정을 통하여 범죄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유사한 자들에게 강한 경고와 자극을 주어 범죄의 길에 나서지 않게 하며, 균등을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반범죄투쟁에 나서게 함으로써 범죄의 예방을 실현하는 것이다.”

고 새롭게 규정하였다.⁶³⁾ 형벌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1974년 형법이 사형, 징역형, 교화노동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등 5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개정 형법은 징역형과 교화노동형을 노동교화형으로 통합하고, 선거권박탈형을 자격박탈·자격정지형으로 세분하였다.

다) 2004년 개정 형법

북한이 현행 형법 체계를 형성한 것은 2004년 형법 개정(2004.04.29)부터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32호에 의거, '87년 8장 161조로 구성된 조문을 9장 303조로 대폭 늘리는 동시에 각 조문마다 제목을 붙였다. 1950년 제정 형법 이래 가장 많은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종전 형법의 조문에 비해 2배 가까이 조항이 늘어나면서 경제·사회 관련 규정들이 대부분 손질되었다.

형법 개정 배경과 관련하여 정치적 상황 변화가 발생했다. '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일은 유훈통치 시대를 마감하고, 김정일 체제로의 진입을 대내외에 선포하였다. 선군정치를 기치로 하여 강성대국 건설, 신사고 및 과학중시 사상 등의 강조에 따라 기존 형법의 수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상황이 변화되었다. 제2의 고난의 행군의 마감과 독립채산제, 개방형 자력갱생 노선의 채택, 7·1경제관리개선 조치 등은 기존 형법으로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였다. 특히 주민들의 상업화가 활발해 지자, 이를 사회주의 틀 속에서 조절하고 제어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63) 조용춘, “주체의 형법리론이 새롭게 밝힌 공화국 형벌의 적용목적,” 『정치법률연구』 4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참조.

그럼에도 개정 형법 제6조는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를 신실함으로써 종래의 유추해석 인정 조항을 삭제하고, 시대적 변화와 북한주민의 욕구를 사회주의 법체계 내에서 수용하고자 시도하였다. 즉, 현실화된 시장경제적 요소를 인정하되, 최소화시킴으로써 사회주의 계획경제 안으로 포섭을 시도한 것이다. 또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 인권압력에 대응하는 측면도 존재하였다.

범죄요건과 형벌을 규정한 제2장 일반규정에서는 형벌의 종류를 5종에서 8종으로 세분하고, 종래의 노동교화형을 무기와 유기로 구분하였으며, 노동단련형을 신설(제31조)하여 245개 범죄사항 중 170개 범죄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2004년 개정 형법은 반국가범죄에 대한 처벌대상을 확대시켰다.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제59조~제72조)에 대해 세부조항을 각기 규정하고, 선군정치에 따라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제73조~제88조) 조항을 신설했다.⁶⁴⁾ 이외, 제5장은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범죄’(제89조~제192조),⁶⁵⁾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제193~제218조),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제219조~제245조), 제8장 ‘사회주의 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제258조~제277조),⁶⁶⁾ 제9장 ‘공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제278조~제303조) 등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반사회주의적 범죄에 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외부정보 유입 차단 관련규정을 마련하였는바, ‘퇴폐적인 문화반입 유포죄’(제193조),

64) 이전의 형법에서는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에 군 관련 범죄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2004년 개정된 형법에서는 별도의 장으로 분류하고, 이를 16개 조항으로 늘려 마치 군 형법을 옮겨 놓은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65) 2004년 개정 형법의 핵심이라 할 수 있으며, 제5장 2절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부분은 개정 전 18개 조항에 불과했으나, 개정 이후 74개 조항으로 증가하였다.

66) ‘역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 파손죄’(제196조), ‘역사유물 밀수, 밀매죄’(제198조), ‘컴퓨터망 침입죄’(제201조), ‘정보파손죄’(제202조), ‘비법아편재배, 마약제조죄’(제216조) 등이 신설되었다.

‘퇴폐적인 행위죄’(제194조), ‘매음죄’(제261조) 등 음란문화와 함께 ‘패싸움죄’(제259조), ‘미신행위 및 미신행위 조장죄’(제267~제268조), ‘비법혼인죄’(제207조) 신설 등 반사회적 일탈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적대방송청취죄’(제195조), ‘허위날조 유포죄’(제222조) 등 외부 정보차단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새로 추가된 범죄의 유형만으로도 북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가를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라) 2009년 개정 형법

2009년 개정 형법은 2004년 형법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체 조문의 절반이 넘는 155개 조문을 변경하거나 자구를 수정 하였다. 3개 조문이 삭제되었으나, 추가로 3개 조문이 신설되어 전체 조문 수는 2004년과 동일하게 9장 303개 조를 유지하였다.

’09년 수정 형법은 ’09년 개정 헌법에서 천명된 선군사상을 형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조치로 간주할 수 있다.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후계 체제 유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하고 처벌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개정형법에 대해 북한의 조용춘은 “형벌의 가장 큰 목적은 반국가범죄자들이 더는 반항할 수 없도록 철저히 진압하는 것”이라고,⁶⁷⁾ 주장함으로써 흡사 1974년 형법개정 당시의 형사 정책적 수사법이 다시 등장한 느낌이다. 따라서 ’09년 개정 형법에서 체제유지와 관련된 규정들을 정비한 것은 김정은 후계구도를 염두에 두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67) 조용춘, “주체의 형법리론이 새롭게 밝힌 공화국 형벌의 적용목적,”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4호, 33쪽.

〈표 III-3〉 2004년과 2009년 개정형법 비교

구분	2004년 형법	2009년 형법	비고
제73조	국방위원회 결정, 명령, 지시 위반죄: 2년이하 노동단련형	국방위원회 위원장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지시,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결정·지시 위반죄: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처벌범위 확대
제74조	전시생산 준비를 하지 않은 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전시생산 준비를 하지 않은 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처벌 강화
제78조	무기·탄약·불법 휴대·양도 죄: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무기·탄약약취, 대량의 전투기술 기재 약취죄: 3년 이상 8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신설 (처벌강화)
제86조	군인으로 가장한 죄: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군인으로 가장한 죄: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처벌강화
제193조	퇴폐적인 문화반입: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성 녹화물 반입·보관·유포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신설 (처벌강화)
제217조	불법 마약 사용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불법 마약 사용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처벌강화
제222조	허위 날조·유포죄: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	허위풍설 날조·유포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처벌강화
제233조	불법국경출입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3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불법국경출입죄: 정상이 무거운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	처벌강화

2004년 형법 제7조(형벌적용의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범죄의 엄중성 정도와 범죄자의 개준성(改俊性)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한다.”고 하였는데, 2009년 형법은 “국가는 범죄와 범죄자의 위험성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하도록 한다.”고 하여, 과거로 퇴행하였다.

형법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제59조~제72조)에서는 범죄를 저지른 개인 뿐 아니라 가족이나 그 주변인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대

상과 범위를 확대하였다.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제73조~제88조) 부문은 가장 많이 수정된 분야다.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벌대상이나 처벌범위를 추가함으로써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이는 경제난 극복과 김정은 후계체제 구축을 위한 군사 부문의 기강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제5장 제2절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제89조~제192조) 부분에서는 제107조(마약, 폭약의 보관, 공급질서위반죄)를 별도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 등에서 마약을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⁶⁸⁾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제193조~제218조)는 2004년 형법 개정에 이어 2009년 형법에서도 많은 변화가 수반되었다. ‘력사유적도굴죄’(제197조)와 ‘력사유물 밀수, 밀매죄’(제198조)의 경우 예전에는 공모행위는 처벌하지 않았으나, 개정 형법에서는 공모자에 대해서도 가중처벌 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또한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제219조~제257조)의 경우도 많은 조항을 개정하여 처벌대상을 확대하거나 처벌 정도를 강화하였다.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제258조~제277조)와 제9장 ‘국민의 생명재산을 침해한 범죄’(제278조~제303조)의 경우에도 다수의 조문이 개정되었다. 처벌유형이 포괄적으로 규정되거나 가중처벌이 신설되는 등 전반적으로 처벌이 강화되었다.

마) 2012년 개정 형법

2012년 5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87호에 따라 개정된 형법은 전체 9장 29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09년 형법과 비교할 때 13개 조문이 축소되었다. '09년 형법이 처벌 측면에서 '04년 이

68) 2009년 개정형법의 경제관련 내용은 많은 부분이 개정되었지만 2004년 개정형법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구수정이나 조문 명을 재정비하는 정도이거나, 새로 발생한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전 형법으로 회귀하였다면, '12년 형법은 이를 다시 복원시킨 법률로 볼 수 있다.

〈표Ⅲ-4〉 형법의 임무 규정 변화

구분	내 용
1950	“제1조 형법은 죄를 범한 자에게 본법에 규정한 형벌을 적용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범죄행위로부터 보위하는 것을 과업으로 한다.”
1987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의 임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을 보위하고 공화국 정부의 노선과 정책을 옹호 관철하며, 모든 범죄적 침해로부터 노동자, 농민의 주권과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고, 인민의 헌법적 권리와 생명, 재산을 보호하며 국가, 사회 일색화하는 역사적 위업에 기여하는데 있다.”
2004	“제1조(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와의 투쟁을 통하여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며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한다.”
2012	“제1조(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 및 형벌제도를 바로 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09년 형법 제2조 '범죄자의 처리원칙'과 제3조 '범죄의 미연방지원칙'을 '12년 개정 형법에서는 그 순서를 바꿔 제2조에 '범죄의 미연방지원칙'으로 조정하였다.

한편 형법 제6조에서 '형벌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제7조 '형벌적용의 원칙'에서 비록 범죄자의 위험성 정도에 따라 형벌을 적용하도록 적시돼 있으나, 제14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일반조건'에 “가벌성이 작은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고 규정하는 조항과 제18조~제26조의 범죄구성 요건 및 처벌유보 조항 등을 감안해 볼 때, '09년 형법보다 일부 분야에서는 진일보한 내용도 있다.

〈표 III-5〉 죄형법정주의 및 유추규정의 변화

구분	내용
1950	“제9조 범죄적 행위로서 그에 직접 해당하는 규정이 본 법에 없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 법 중 그 중요성과 종류에 있어서 가장 비슷한 죄에 관한 조항에 준거하여 그 책임의 기초와 범죄 및 형벌을 정한다.”
1987	“제10조 범죄행위를 한 경우 형사법에 그와 꼭 같은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을 때에는 이 법 가운데서 그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가장 비슷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와 위험성으로 보아 그와 유사한 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으며 해당 조항에서 규정한 침해 대상과 사회관계, 주관적 표징과 범인의 표징의 한계를 넘어 류추할 수 없다.”
2004	“제6조 (형법에 규정된 행위에 대해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 국가는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2012	“제6조(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는 원칙) 국가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27조 ‘형벌의 종류’에서 벌금형을 신설함으로써 형법이 정하는 형벌로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 등 모두 9가지로 늘어났다.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제60조~제73조) 제66조 대외관계 단절을 목적으로 자금을 대준 경우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을 신설하였고, 제68조 민족반역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서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으로 형기를 단축시켰다.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제74조~제90조)는 전체적으로 형량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수정하였다.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제91조~182조)에 규정된 범죄도 '09년 형법과 비교할 때 거의 대부분의 형기를 1/2로 낮추었으며, ‘국가재산대량약취죄’(제95)를 신설하여, 총량이 많을 경우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화폐매매죄’(제106조)

와 ‘외화사용질서위반죄’(제108조), ‘비법적인 영업죄’(제114조) 및 ‘생산수단수리질서위반죄’(제139조), ‘국가건물이용질서위반죄’(제142조) 등을 신설하여 금융질서의 회복을 모색하였다.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제183조~제208조)의 형벌도 완화하였다.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제209조~제245조) 부문에서는 ‘독립임무수행태만죄’(제218조)와 ‘비법협조죄’(제222조)를 신설하였고, 공화국을 적대시하는 자를 도와 준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도록 하였다.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제246조~제265조) 역시 대부분의 양형이 완화되었다.

제9장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제266조~제290조)도 양형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었으며, '09년 형법과 비교할 때 삭제된 조문에는 ‘국가재산공갈죄’(제91조), ‘비법적으로 설비와 물자를 외화로 팔고산죄’(제106조), ‘개인의 상적행위죄’(제110조), ‘노력착취죄’(제119조), ‘비법적으로 외화벌이를 한 죄’(제125조), ‘계획에 없는 제품생산, 건설죄’(제132조), ‘부동산관리질서 위반죄’(제140조), ‘국가건물구조변경죄’(제174조), ‘국가건물을 보수하지 않은 죄’(제148조), ‘생산물의 비법처분죄’(제161조), ‘전화설치위반 및 사용을 방해한 죄’(제167조), ‘노력배치, 조절, 동원을 무책임하게 한 죄’(제188조), ‘교육강령, 과정을 무책임하게 한 죄’(제204조), ‘법일군의 직무집행방해죄’(제221조), ‘증명서 매매죄’(제225조), ‘국경출입협조죄’(제234조), ‘항해, 어로구역 이탈죄’(제235조), ‘미신행위조장죄’(제268조) 등이 있다.

바) 2015년 개정 형법

'15년 개정 형법의 특징은 김정은 체제의 출범에 따라, 체제보위와 무관한 분야에서는 처벌이 완화되었으나, 반대로 체제에 위협이 될 분야의 경우, 양형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⁶⁹⁾ 또한 북한 형법 제8조

69) 이백규,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 『통일과 법률』 제23호 (서울: 법무부, 2015),

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형법에서 규정된 속인주의, 속지주의, 보호주의 원칙도 채택하고 있다.⁷⁰⁾

이번 개정 형법은 김정은 체제의 등급에 따른 헌법 개정과 그 궤를 같이하고 있다. 형법 제74조 ‘명령, 결정, 지시집행 태만죄’는 “주석,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원장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결정·지시 등을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석’과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12년 형법에 없는 추가된 표현이다.

범죄유형에 따른 죄명에는 ‘경제침해 범죄’ → ‘일반행정관리질서 침해 범죄’ → ‘사회주의공동질서를 침해한 범죄’ → ‘반국가 및 민족범죄’ 및 ‘국방질서를 침해한 범죄’ →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 ‘자금세척·테로자금지원 범죄’ 등의 순으로 많았다.

〈표 III-6〉 2015년 형법에 의한 범죄유형과 범죄명

대분류	중분류	범죄명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17)	반국가범죄(8)	국가전복음모죄, 테로죄, 반국가선전·선동죄, 조국반역죄, 간첩죄, 파괴·임해죄, 무장간섭·대외관계단절사촉죄, 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반민족범죄(3)	민족반역죄, 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조선민족적대죄
	은닉·불신고·방임죄(6)	반국가·반민족범죄, 은닉죄, 반국가범죄 불신고죄, 반국가범죄, 방임죄
국방질서를 침해한 범죄(17)		명령·결정·지시집행태만죄, 전시생산준비 태만죄, 무기·탄약·전투기술기재약취죄, 무기·탄약비법휴대·양도죄, 군사시설 고의적파손죄, 군사시설 과실적파손죄, 군사경비근무질서위반죄, 군사임무수행방

65-66쪽.

70) 최용보,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형사법 충돌 해결방안,” 「통일과 법률」 제25호(서울: 법무부, 2016), 36쪽.

		<p>해죄, 군수품분실죄, 군수품매매죄, 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 죄, 불합격군수품생산죄, 군수품유용죄, 군사복무동원기피죄, 탈영자은닉죄, 군인으로 가장한 죄, 국방비밀누설죄</p>
	<p>국가·사회협동단체 침해죄(9)</p>	<p>국가재산훔친죄, 국가재산빼앗은죄, 국가재산속여 가진죄, 국가재산횡령죄, 국가재산대량략취죄, 국가재산강도죄, 국가재산공동탐오죄, 국가재산고의파손죄, 국가재산과실적파손죄</p>
<p>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87)</p>	<p>경제관리질서 침해죄(59)</p>	<p>위조화폐사용죄, 위조증권사용죄, 무현금결제수단사용죄, 대부질서위반죄, 화폐교환질서위반죄, 화폐매매죄, 외화관리질서위반죄, 탈세죄, 국가납부질서위반죄, 암거래죄, 거간죄, 고리대죄, 개인·기업영업죄, 무역·외화별이기관 상적행위죄, 특허·상표권 침해죄, 귀금속·유속금속 밀매죄, 수출입질서위반죄, 대외경제활동질서위반죄, 비법적외화원천동원죄, 비법적수송죄, 철도·수송·항공질서위반죄, 화차·짐배 리용질서위반죄, 운수수단운행방해죄, 인민경제계획규률위반죄, 계약규률위반죄, 국가예비물품리용질서위반죄, 마약·독약공급질서위반죄, 비법적인 경제관리죄, 원료·자재·자금·설비유용죄, 국가재산류실죄, 설비·물자·자재·자금비법 처분죄, 재산략취하여 넘겨준죄, 오작품·불합격품 생산죄, 품질감독질서위반죄, 생산수단·수리질서위반죄, 설비점검·보수질서위반죄, 오작설계·오작시공죄, 국가건물리용질서위반죄, 준공검사·리용허가질서 위반죄, 사용허가받지 않고 건설물·기계·설비리용죄, 실리없는 시설건설·기계설비제작죄, 국가살림집리용질서위반죄, 농업생산질서위반죄, 수의방역·사양관리질서위반죄, 양어사업질서위반죄, 천해양식질서위반죄, 상품공급질서위반죄, 상품판매질서위반죄, 량정질서위반죄, 밀주죄, 계량기구량목위반죄, 전력공급질서위반죄, 전력사용질서위반죄, 체신사업질서위반죄, 해사감독질서위반죄, 해난구조의무기피죄, 가격제정질서위반죄, 난방열도죄, 주민연료공급질서위반죄</p>

	<p>국토관리·환경보호질서 침해죄(12)</p>	<p>토리이용질서위반죄, 수해방지태만죄, 지하자원개발·채굴·제련질서위반죄, 개인의 광석채취·제련죄, 산림조성·보호·이용질서위반죄, 산림고의적 파손죄, 과실적산불죄, 비법적인 산 개관죄, 수산·동식물자원보호질서위반죄, 환경보호질서위반죄, 하천보호시설파손죄, 도로관리질서위반죄</p>
	<p>노동행정질서 침해죄(7)</p>	<p>노동보호·안전시설 미비죄, 노동안전질서위반죄, 화재방지규정위반죄, 교통사고죄, 사회주의분배질서위반죄, 미성인로동시킨죄, 여성금지로동시킨죄</p>
<p>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24)</p>		<p>퇴폐문화반입유포죄, 퇴폐행위죄, 적대방송청취·보관·유포죄, 역사유적·유물·명승지·천연기념물 고의적파손죄, 역사유적·유물·명승지·천연기념물과실적파손죄, 역사유적도굴죄, 역사유물밀수·판매죄, 저작·발명·묵살죄, 컴퓨터망침입죄, 정보파손죄, 허위정보·입력·유포죄, 후비양성질서위반죄, 체육선수선발질서위반죄, 어린이보호·관리질서위반죄, 의료사고죄, 치료거부죄, 비법의료죄, 불량 의약품생산죄, 가짜의약품·식품제조·판매죄, 위생방역사업태만죄, 국경검역사업태만죄, 장기·태아·혈액매매이용죄, 비법아편재배·마약제조죄, 비법마약사용죄, 마약밀수·거래죄</p>
<p>일반행정관리질서 침해 범죄(37)</p>	<p>일반행정질서 침해죄(26)</p>	<p>집단적소동죄, 직무집행방해죄, 허위풍설·날조유포죄, 공인비법사용·위조죄, 문서·위조사용죄, 출판질서위반죄, 폭발물·휴대·사용·양도죄, 위험성물질수송질서위반죄, 경비근무질서위반죄, 독립임무수행태만죄, 고의적비밀누설죄, 과실적비밀누설죄, 비법국경출입죄, 비법국경통신죄, 영공·영해침입죄, 거짓신고·진술죄, 증인협박죄, 사건관계자 복수죄, 일반범죄은닉죄, 일반범죄불신고죄, 도주죄, 뇌물죄, 정치협착죄, 재산비법처분·이용죄, 부당한신소죄, 대외적권위훼손죄</p>
	<p>직무상범죄(11)</p>	<p>직권남용죄, 월권행위죄, 직무태만죄, 물질적부담시킨죄, 신소·청원처리질서위반죄, 국가기관권위훼손</p>

		죄, 강제수단비법적용죄, 사건과장·날조죄, 비법적방·사건약화죄, 부당판결·판정죄, 판결·판정집행하지 않은죄
사회주의공동생활 질서를 침해한 범죄(19)		불량자적행위죄, 패싸움죄, 미성인범죄추진죄, 매음죄, 음탕한 행위죄, 직권남용죄, 거짓행세죄, 실력행사죄, 명예·칭호참용죄, 도박죄, 미신행위죄, 비법혼인·가정파탄죄, 노인·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양로사업질서위반죄, 습득물횡령죄, 사례금바치지 않은 죄, 약취물건거래죄, 묘파괴죄, 엄중한 결과발생 방임죄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15)	생명·건강·인격 침해죄(17)	고의적중살인죄, 고의적경살인죄,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정당방위 초과 살인죄, 과실적 살인죄, 고의적 중상해죄, 발작적 격분에 의한 중상해죄, 과실적중상해죄, 고의적 경상해죄, 폭행죄, 비법자유구속죄, 어린이를 훔치거나 감춘죄, 유괴죄, 강간죄, 복종관계 여성 강요성교죄, 미성인성교죄, 모욕·명예훼손죄
	개인소유를 침해한 죄(8)	개인재산훔친죄, 개인재산빼앗은죄, 개인재산속여가진죄, 개인재산횡령죄, 개인재산다량약취죄, 개인재산강도죄, 무거운형태개인재산약취죄, 개인재산고의적 파괴죄,
자금세척·테러자금지원범죄(10)		비법적자금거래·소유·이용죄, 비법적 돈자리개설·계약체결죄, 자금원천·용도·거래자 신분확인하지 않은죄, 거래자료분실·소각죄, 의심자금거래 보고하지않은죄, 테러자금보장·송달죄, 조사에 협력하지 않은죄, 자금동결·압수·몰수하지 않은죄, 자료누설죄, 자금세척·테러자금지원범죄에 대한 은닉죄

또한 개정 형법에는 제10장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범죄를 추가로 신설하고, 10개 조로 범죄를 적시하였다. 이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금융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2014~2015년께 벌였던 돈세탁과 관련된 제도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표 III -7〉 북한형법상 형벌의 변화

1950년	1974년	1987년	1999년
1. 사형 2. 징역 3. 교화노동 4. 벌금 5. 일정한 권리의 박탈 6. 일정한 직업 또는 영업의 금지 7. 일부 또는 전부의 재산 몰수	1. 사형 2. 징역 3. 교화노동 4. 선거권 박탈 5. 재산몰수	1. 사형 2. 노동교화 3. 선거권박탈 4. 재산몰수 5.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	1. 사형 2. 노동교화 3. 선거권박탈 4. 재산몰수 5. 자격박탈 및 자격정지
2004년	2007년	2012년	2015년
1. 사형 2. 무기노동교화 3. 유기노동교화 4. 노동단련 5. 선거권박탈 6. 재산몰수 7. 자격박탈 8. 자격정지	1. 사형 2. 무기노동교화 3. 유기노동교화 4. 노동단련 5. 선거권박탈 6. 재산몰수 7. 자격박탈 8. 자격정지	1. 사형 2. 무기노동교화 3. 유기노동교화 4. 노동단련 5. 선거권박탈 6. 재산몰수 7. 벌금 8. 자격박탈 9. 자격정지	1. 사형 2. 무기노동교화 3. 유기노동교화 4. 노동단련 5. 선거권박탈 6. 재산몰수 7. 벌금 8. 자격박탈 9. 자격정지

북한의 형법에 규정된 형벌로는 기본형벌로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등이 있다. 이외 부가형벌로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거권박탈형과 벌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산몰수형은 사형판결을 받은자에게 각각 달리 적용하고 있다.⁷¹⁾

71) 2009년 10월 구법 제28조에는 “사형, 무기노동교화형, 유기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은 기본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벌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재산몰수형은 사형판결을 받은자에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 III-8〉 북한 형벌의 내용 비교

징역형	교화노동형	노동교화형	무기·유기 노동교화형	노동단련형
일정한 구금소 또는 특별노동 수용소에 수용하여 노동형을 집행	특별히 지정한 장소에서 또는 자기의 종전 근무직장에서 노동에 종사하며 노동보수 중 일부를 국가에 납부	종전의 징역형에 대해 그 명칭을 바꾼 것으로 교화소에 수용하여 노동형을 집행	무기/유기노동교화형은 교화소에서 노동을 시키는 형벌로 유기노동교화형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한다.	일정한 장소에 보내 2년 이내 노동을 시키는 형벌 (국민의 기본권리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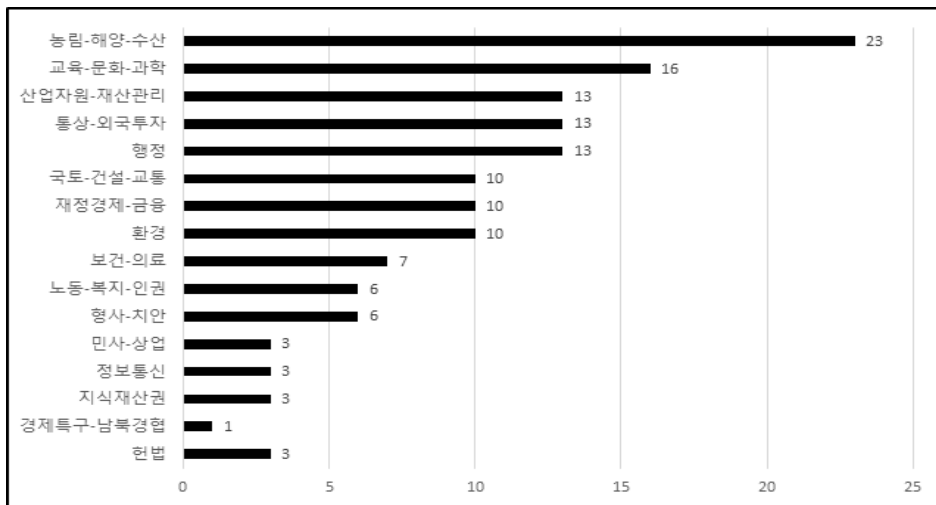
북한의 형벌은 징역형이 '87년부터 노동교화형으로 바뀌었으며, 무기/유기 노동교화형은 국민의 기본권리가 박탈되며 형기를 통해 구분되고 있다. 반면 노동단련형은 국민의 기본권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차이성이 있다.

제2절 김정은 집권이후 형법 개정 내용

1. 북한법전 개관

북한이 발간한 '0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과 '12년 출판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을 비교할 때, '12년 법전에서는 75개의 부문법이 추가되어 있다. 8년 동안 입법 활동이 매우 활발했음을 간접적으로 대변해 주고 있다. 또한, '12년 법전에서는 법령을 18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수록하고, 자모순으로 배치하여 이전의 법전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표Ⅲ-9〉 부문별 법률 제·개정 현황



2016년 법전은 제1편(2012년), 제2편(2013년), 제3편(2014년), 제4편(2014년)으로 구분하고, 각 년도에 새로 채택된 법과 수정·보충된 법을 구분하여 편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16년 법전을 기준으로 하여 '12년 법전과 비교할 때, 총31개의 법률이 새롭게 입안되었고, 109개의 법률이 개정되었다.

“북한법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그동안 국내에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어 왔다. 종래 북한법을 체계화한 사례로 학자에 따라 15~16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나, 법제처 북한법제정보센터는 (1)헌법, (2)행정, (3)사법, (4)형사·치안, (5)민사·상사, (6)재정·경제, (7)외교·통상, (8)산업자원, (9)국토·교통, (10)농림수산, (11)교육·과학기술·문화·출판, (12)보건, (13)환경, (14)정보통신, (15)지적재산, (16)노동·복지, (17)특구·경협 등 17개 항목으로 분류·체계화 하고 있다.⁷²⁾

우리나라 법제처의 분류체계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에 수록된 140개 법령을 16개 분야로 재분류하여 분석할 경우, 앞의 <표Ⅲ-9>와 같이 ‘농림·해양·수산 부문’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육·문화·과학 부문’이 16건을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산업자원 및 재산관리 부문’(13건), ‘통상·외국투자 부문’(13건), ‘헌법관련 및 행정 부문’(13건) 등에서 다수의 법률이 제·개정되었다.

2. 주요 조문 분석(2012~2015)

가. 일반규정

<표Ⅲ-10> 형법 신·구조문 대비표

형법 개정일자	조항	내용
2012.5.14	19조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제2항 고의적중살인죄, 고의적경살인죄, 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정당방위초과살인죄, 과실적살인죄, 고의적중상해죄, 강도죄, 강간죄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3.6.19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제2항 고의적중살인죄, _____ 강간죄, 늙은이, 어린이보호 책임회피죄, 학대갈시죄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72) 송진호, “북한법 이해의 새로운 모델: 분류와 체계”, 109-110 쪽.

2013.9.26		-
2014.4.24		-
2015.1.21		-
2012.5.14	31조	(로동단련형) 제4항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을 로동 단련형 기간 2일로 계산한다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로동단련형) 제4항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을 로동 단련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2012.5.14	41조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4.미성인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2013.6.19		-
2013.9.26		-
2014.4.24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4. 삭제
2015.1.21		-
2012.5.14	50조	(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조건) 미성년이 범죄를 저질렀거나 성인이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사회적교양의 방법으로 고칠수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할수 있다.
2013.6.19		-
2013.9.26		-
2014.4.24		(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조건) 일반범죄를 저지른자를 그의 개준성정도, 고칠수 있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할수 있다.
2015.1.21		-
2012.5.14	52조	-
2013.6.19		-
2013.9.26		(집행유예조건과 기간) 제2항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은자가 선고받은 형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내놓은 경우에도 3년부터 5년 까지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2014.4.24		-
2015.1.21		-

나.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2012.5.14	74조	(명령, 결정, 지시집행태만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 결정, 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은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명령, 결정, 지시집행태만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국방위원회 위원장 ,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당중앙군사위원회 명령, 결정, 지시,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 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은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0년이상 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다. 사회주의 경제를 침해한 죄

2012.5.14	98조	(국가재산공동탐오죄) 비법적으로 상금, 우대제, 생활비를 적용하였거나 각종 총화, 후방사업의 명목으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의 공동탐오를 지시하였거나 조직한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국가재산공동탐오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의 공동탐오를 지시하였거나 조직한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2012.5.14	110조	-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국가납부질서위반죄) 제2항 특히 대량의 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114조	(비법적인 영업죄) 개인이 국가기관의 승인없이 영업활동을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개인의 기업 및 영업죄) 개인이 기업 및 영업활동을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012.5.14	119조	(밀수죄) 제2항 대량 또는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를 해당 부문 공무원이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밀수죄) 제2항 대량 또는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122조	(비법적인 외화원천동원죄)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외화원천동원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비법적인 외화원천동원죄) 개인들에게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외화원천동원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012.5.14	124조	(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위반죄) 운수조직과 지휘를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교통운수질서를 어겨 기차, 배, 비행기를 손상시켰거나 그 정상적운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위반죄) 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를 어겨 대량의 재산적 손실을 주었거나 그 정상적운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012.5.14	127조	(인민경제계획규률위반죄) 인민경제계획을 되는대로 세웠거나 계획을 고쳤거나 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하였거나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아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에 지장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인민경제계획규률위반죄) 지방 또는 기업소지표 계획을 되는대로 세웠거나 계획을 고쳤거나 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하였거나 — 지장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중앙지표계획을 되는대로 세웠거나 계획을 고쳤거나 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하였거나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아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 발전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128조	—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계약규률위반죄) 제2항 중앙지표계획에 기초한 계약규률을 어겨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132조	(국가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준 죄) 화폐를 비롯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국가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주었거나 빌려준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주었거나 빌려준 자 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012.5.14	136조	—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재산을 략취하여 기관에 넘겨준 죄) 제2항 특히 대량의 재산을 략취하여 또는 빼앗거나 강도의 방법으로 재산을 약취하여 자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썼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라.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2012.5.14	165조	(토지보호질서위반죄) 토지보호질서를 어겨 토지를 류실시킨 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수해방지태만죄) 수해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자 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012.5.14	169조	(신뢰람도벌죄) 개인이 신뢰를 람도벌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주요대상자의 신뢰를 람도벌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신림고의적파손죄) 신림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 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주요대상지의 신림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	---

2012.5.14	170조	—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과실적산별죄) 제 2항 대량 또는 주요대상지의 신림자원에 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174조	—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하천보호질서위반죄) 제2항 하천보호시설을 파손시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183조	—
2013.6.19		—
2013.9.26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제2항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의 록화물, 전자매체 같은 것을 여러번 반입, 류포하였거나 많은 량을 보관하고있는 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4.4.24		—
2015.1.21		(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제2항 여러번 또는 대량을 반입, 제작, 류포, 보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184조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매체 같은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2013.6.19		-
2013.9.26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 앞항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2014.4.24		-
2015.1.21		(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매체 같은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그러한 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한다.

2012.5.14	185조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적대방송청취, 적지물 수집, 보관, 류포죄) 제2항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대량의 적지물을 수집, 보관, 류포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192조	-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컴퓨터망침입죄) 제2항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206조	-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p>(비법아편재배, 마약, 독성물질제조) 제2항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p>
2012.5.14	208조	<p>(마약밀수, 밀매죄) 마약을 밀수, 밀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 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마약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마약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10년이상 로동교화형에 처한다.</p>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p>(마약밀수, 거래죄) 마약을 밀수, 거래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 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마약을 밀수, 거래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마약을 밀수, 거래한 경우에는 10년이상 로동교화형에 처한다.</p>

마.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2012.5.14	216조	<p>(위험성물질수송질서위반죄) 제2항 앞항의 행위로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항의 행위로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일으키게 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p>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위험성물질수송질서위반죄) 제2항 대량의 방사성, 폭발성, 인화성, 독성물질을 비법적으로 운반하였거나 부쳤거나 부쳐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230조	(뢰물죄) 제2항 특히 대량의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 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뢰물죄) 제2항 특히 대량의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하 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 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231조	(봉인손상죄)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한 봉인을 손상시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정치협잡죄) 정치협잡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극히 엄중한 정치협잡행위를 한 경우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235조	(직권람용죄) 제2항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 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제235조(직권람용죄) 제2항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 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238조	(물질적부담을 시킨 죄) 지원, 후원, 부조, 사업보장의 명목으로 물질적부담을 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물질적부담을 시킨 죄) 지원, 후원, 부조, 사업보장과 같은 각종 명목으로 물질적부담을 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물질적부담을 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240조	—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국가기관권위훼손죄) 제2항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241조	(비법체포, 구속, 수색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강제수단 비법적용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242조	(사건과장, 날조죄) 제2항 앞항의 행위로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형사책임을 지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	--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사건과장, 날조죄) 제2항 앞항의 행위를 공모하였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부당한 형사 책임을 지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243조	(비법석방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범피자를 놓아주었거나 범 죄사실을 가볍게 하여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비법석방 및 사건약화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범피자를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 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2012.5.14	246조	(불량자적행위죄) 제2항 잔인한 방법으로 불량자적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불량자적행위죄) 제2항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불량자적행위를 한 경우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바.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죄

2012.5.14	256조	—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미신행위죄) 제2항 여러명에게 미신행위를 배워주었거나 미 신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 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	--	--

사.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2012.5.14	277조	(어린이훔친 죄) 리기적목적 또는 복수적동기에서 어린이를 훔쳤거나 감춘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제277조(어린이를 훔치거나 감춘죄) 리기적목적 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어린이를 훔쳤거나 감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 범죄

2012.5.14	291조	—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비법적인 자금거래 및 소유, 리용죄) 비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을 그 원천과 용도를 위장할 목적으로 거래하였거나 비법적인 자금이라는 것을 알면서 소유 또는 리용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이상의 자금을 거래하였거나 소유 또는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292조	—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비법적인 돈자리개설 및 계약체결죄) 비법적으로 돈자리를 개설해주었거나 생명보험, 신탁업무계약같은 것을 체결한 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범죄행위가 조장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293조	—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자금원천과 용도, 거래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 죄) 자금원천과 용도의 적법성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신분이 확인되지 않은 자로부터 자금을 징수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2012.5.14	294조	—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거래자확인자료같은 문건을 분실, 소각한죄) 거래자확인자료같은 문건을 보관기일이 지나기전에 분실, 소각하여 감독기관의 사업에 지장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295조	—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의심되는 자금거래를 보고하지 않은 죄) 의심스러운 자금거래를 보고할 의무를 지닌자가 그러한 행위를 발견하고도 제때에 금융정보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이상의 비법적인 자금거래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296조	—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테로자금보장 및 송달죄) 반국가적고의가 없이 다른 나라 테로조직이나 그 성원에게 리용당하여 자금을 보장해주었거나 송달해준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

		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297조	—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조사에 협력하지 않은 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조사와 관련하여 해당 권한있는 기관의 협력요구를 거부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해당 권한있는 기관의 조사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298조	—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자금동결 및 압수, 몰수하지 않은 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를 조사하면서 응당 하여야 할 자금동결이나 압수, 몰수를 하지 않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299조	—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자료루설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 적발사업과정에 알게 된 자료를 루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 적발사업에 엄중한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2012.5.14	300조	—
2013.6.19		—
2013.9.26		—
2014.4.24		—
2015.1.21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에 대한 은닉죄) 자금세척 및

	<p>테로자금지원범죄를 감추어준자는 1년이하의 <u>로동단련형에 처한다.</u> <u>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u></p>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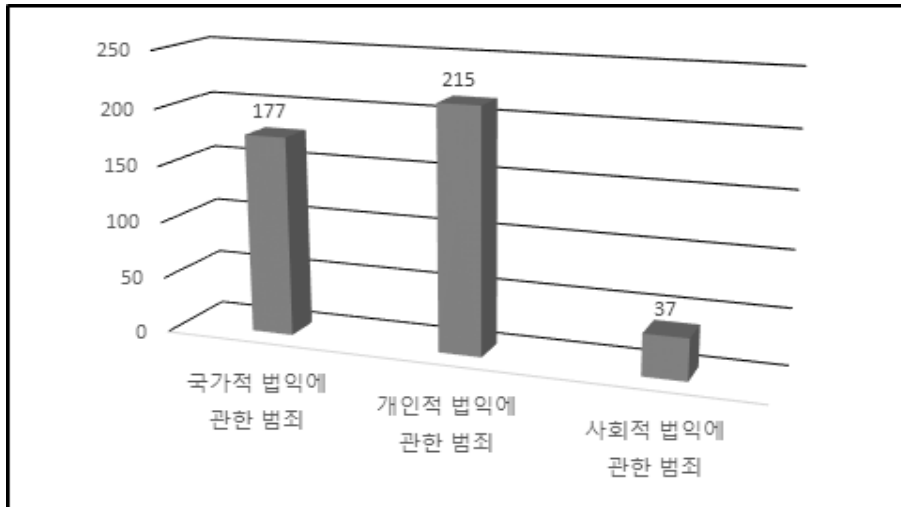
IV. 북한 형법 적용사례

제1절 범죄유형과 실태

북한의 법집행 기관에서 범죄의 유형과 사례, 그리고 처리방향을 적시한 연구자료는 전무했다. 그러나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후계세습 과정에서 북한 내부는 상당한 사회불안이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에서 보듯 사회불안은 그동안 견고히 지켜온 독재체제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를 위협할 사건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실제 사건과 처리방향을 담은 인민보안성 내부 지침서인 「법투쟁 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이하, 법투쟁 참고서)를 발행하였고,⁷³⁾ 이것이 북한이탈주민을 통해 한국사회에 알려지게 되었다.

「법투쟁 참고서」는 크게 3개 분야로 나뉘는데, 첫 번째 단원에는 전거주의에 입각한 김일성-김정일의 교시, 두 번째 단원에는 김일성 가족의 모범 사례를 기술하였고, 마지막 단원에서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다. 인민보안성이 발간한 「법투쟁부 참고서」에는 429건의 범죄사례가 예시돼 있는데, 이들 범죄를 분석할 경우 사회변화에 따른 북한의 범죄유형을 간접적이거나 유추할 수 있다.

73) 「법투쟁 참고서」에서 소개된 범죄유형을 분석해 볼 때, '반국가 및 반민족 범죄' 사례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이 사회안전성이 아니라 국가보위성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보위성은 국가안전보위부로 불렸으나, 2016년 북한의 국방위원회가 국무위원회로 재편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다.

〈표Ⅳ-1〉 「법투쟁부문 일군들을 위한 참고서」에 게재된 범죄유형⁷⁴⁾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를 세분할 경우,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와 ‘자유에 관한 범죄’, ‘재산에 관한 범죄’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생명·신체에 관한 범죄’는 살인죄로 나타나는데, 「법투쟁 참고서」에는 30건의 사례가 소개돼 있다. 살인의 동기와 관련하여 치정·불륜(8건), 재산분쟁(7건), 보복성(4건), 안락사(3건), 자살방조(2건), 강간(1건), 정신이상(1건), 기타(4건) 등이다. 반면 범죄의 원인에 따라 구분하면, 교통사고(11건), 직무유기(5건), 의료사고(4건), 안전사고(4건), 부주의(3건), 기타(3건)로 구분된다.

‘자유에 관한 범죄’는 강요·체포·강금행위를 포함하는 범죄이다. 한편, ‘재산에 관한 범죄’는 49건의 절도범죄 사례를 예시하고 있다. 절도범죄의 동기와 관련하여 경제적 이익도모(24건), 도박·상습절도(5건), 식량 약탈(3건), 유혹·오락(2건), 기관운영자금(1건), 기타(14건) 등의 순이다. 범죄자의 직업별로 세분할 경우, 노동자(21건), 무직자(9건), 미성년자(2건), 군인(2건), 기간원(1건), 범죄단체(1건), 기타(13건) 등이다.

74) 김영호·김용호, “북한 범죄유형과 실태에 관한 고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4), 107쪽.

‘사회적 법익에 관한 범죄’는 공공안전과 평온을 해한 죄, 공공의 신용 및 건강에 대한 죄, 사회풍속과 도덕에 관한 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로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공무방해에 관한 죄, 도주와 무고행위 등이며, 「법투쟁 참고서」에는 15건의 뇌물죄 사례가 열거돼 있다. 이 중에서 관리일군뇌물죄(11건), 일반뇌물죄(4건)이다. 뇌물로 수뢰한 물품으로는 금전이 11건, 가전제품 1건, 성접대 1건, 미상 2건 등이 사례로 제시돼 있다.

김정은은 3대 권력 세습과정에서 김씨 일가는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의 추종자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였다. 통일연구원이 2008부터 2014년까지 7년간 매년 200~250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벌여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0년 이후 공개처형한 주민이 1천 300명을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⁷⁵⁾ 또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거듭된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2월 발표한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에는 4개 정치범 수용소에 8만~12만 명의 정치범이 수감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⁷⁶⁾ 이러한 세계 최고의 정치범 수용소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을 반추해 볼 경우, 자유세계와 달리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법투쟁 참고서」에는 정치범과 관련된 어떠한 사례도 제시되어 있지 않다.

북한 사회는 저개발·독재사회가 그러하듯 사회전반에 걸쳐 부정부패가 만연돼 있다. 수령의 권위와 절대 권력에도 불구하고, 사회기강은 점차 허물어지고 있음을 범죄유형 분석 <표IV-1>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국제투명성기구’(TI)가 세계 176개 나라의

75) 북한인권센터, 「2015 북한인권백서」(서울: 통일연구원, 2015), 참조.

76) 북한의 공식 문헌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법에 근거하지 않는 체포와 구금은 철저히 금지된다. 이 같은 점에 미루어볼 때 정치범수용소 운영 규정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치범과 일반범의 구별 기준, 정치범수용소 수용절차 등 정치범수용소의 운영 관련 규정은 현재까지 공개된 적은 없다. 만일 이 같은 법적 근거 없이 정치범수용소가 운영되고 있다면 자의적인 운영으로서 더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국가청렴도를 조사한 ‘2016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하였는데, 북한은 아프리카 소말리아와 함께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부패인식지수는 부패 정도를 0부터 100까지 점수로 환산해 높을수록 청렴도가 우수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으며, 70점을 넘어야 사회가 전반적으로 투명한 상태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북한은 12점에 불과하여 분석 대상국 중에서 174위를 기록하고 있다.⁷⁷⁾

북한 내부의 계획경제 시스템 붕괴 현상은 범죄 양상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일례로 다른 협동농장의 재산을 취하여 자신의 협동농장에서 비품으로 사용하거나, 농기계작업소 화물차 운전수가 차량이 고장 나자 다른 사업소 차고에 침입하여 부품을 취하는 사례가 나타나는가 하면, 생산총화 시상금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시장에 내다팔아 자을 충당하는 사례 등이 보고되어 있다.⁷⁸⁾

77) “북한, 부패국가 세계 3위…”포퓰리스트·독재자, 부패 악화시켜”, 「연합뉴스」, 2017년 1월 25일자.

78) 김영호·김용호, “북한의 범죄 유형과 실태에 관한 고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제17권 3호(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4), 121-122쪽.

제2절 외국인 강제억류자 처리

1. 외국인 억류자 현황

북한은 2007년 11월 캐나다 교포 김재열 목사 억류이래 최근까지 25명(한국 8명, 미국 14명, 캐나다 2명, 호주 1명)을 억류하였고, 이중 16명은 석방하였다. 석방자의 대부분은 외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들이다.

2017년 8월 현재,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북한 억류 외국인은 9명이며, 한국인 6명 중에서 3명은 선교활동을 위해 북한에 방문한 목사이고, 나머지 3명은 탈북민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평양 인근에 신원미상의 외국인 억류자가 30여명에 달한다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한 일부 보도도 있다.⁷⁹⁾

〈표Ⅳ-2〉 북한의 외국인 억류 사례

성명	국적	억류기간	억류이유	비고
김재열	캐나다	2007.11~2008.1	북한제제 비판 및 포교	석방
로라링, 유나 리	미국	2009.3~8	취재 및 불법입국	석방
유성진	한국	2009.3~8	북한제제 비판 및 포교	석방
로버트 박	미국	2009.12~2010.2	불법입국 및 포교	석방
아이질론 말리 곰즈	미국	2010.1~8	불법입국 및 포교	석방
에디 전	미국	2010.11~2011.6	포교	석방
케네스 배	미국	2012.11~2014.11	포교	석방
김정옥	한국	2013.7~	간첩활동	
메릴 뉴먼	미국	2013.10~12	간첩활동	석방
존 쇼트	호주	2014.2~3	포교	석방
제프리 파울	미국	2014.4~10	성경 유포	석방

79) 조선일보, “평양 인근에 신원미상 외국인 억류자 30여명이나 있다.” 2017년 6월 6일자.

토드 밀러	미국	2014.4~11	반국가적 적대행위	석방
임현수	캐나다	2015.2~7	국가전복음모	석방
김국기	한국	2015.3~	국가전복음모	
최춘길	한국	2015.3	국가전복음모	
주원문	한국	2015.5~10	불법입국	석방
서계옥	미국	2015.3~4	불법촬영	석방
김동철	미국	2015.10~	국가전복음모	
오토 웹비어	미국	2016.1~2016.6	국가전복음모	석방후 사망
고현철 김원호 등 탈북자 3명	한국	2016.5~	재판미실시	
토니 김	미국	2017.4~	재판미실시	
김상덕	미국	2017.5~	재판미실시	

그동안 북한은 외국인 억류를 통해 외교협상 카드로 활용해 왔다. ‘억류 → 고위인사 방북 → 석방’ 등의 패턴을 통해 외교전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하였다. 즉, 외국인 억류를 통해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는 동시에 제한적이거나 관계국과의 협상을 통해 외교적 고립을 완화하려 시도 중이다.

북한은 UN안보리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따른 외화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객 유치 노력을 꾸준히 노력해 왔다. 특히 북한 방문의 주요 참고 역할은 중국이 맡고 있다.

〈표Ⅳ-3〉 북중 관광노선 개설 현황

노선	개항시기	항공사	유형	주기	가격
칭다오~평양	2016.5.22	고려항공	전세기	화/토	3,980위안
지난~평양	2016.5.31	고려항공	전세기	3일 1회	4,080위안
타이위안~평양	2016.8.22	고려항공	전세기	4일 1회	4,980위안 5,480위안
단둥~평양	2017.3.28	고려항공	전세기	화/금	1,500위안

출처: KORTA 상하이무역관

북한은 해외 관광객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전세계 북한 여행을 주선하는 관광사 100개사를 통해 10만명에 달하는 관광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⁸⁰⁾ 이 가운데 중국인 관광객의 비율이 90% 이상이며, 중국 국적을 제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약 8천 명 이내로 추산되고 있다. 이들 외국인 관광객들은 언제든지 북한에 의해 억류될 가능성이 있다.⁸¹⁾

한편, 현재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탈북민이 전체 3만여 명 가운데 3%에 달하는 900명에 달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이 유럽, 캐나다 등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추정된다.⁸²⁾ 그러나, 이중 일부는 자발적으로 재입북한 탈북민도 있을 것이고, 우리 정부기관에서도 모르게 북한에 의해 강제 억류된 탈북민도 있을 수 있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국내정착 탈북민 재입북 사례는 225명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확인된 숫자’에 근거한 것이다. 우리 당국에 동선이 추적되지 않는 재입북자들까지 합치면 그 수가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일치된 견해다.⁸³⁾ 2017년 10월 현재 한국에서 살다가 2012년 이후 재입북한 탈북민은 모두 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⁸⁴⁾

2. 형법적용 조문분석

그렇다면, 북한 내 억류 외국인은 어떤 형법조항을 적용받고 있을 것

80) VOA, “북한 관광 독일인 연간 350~400명...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4%”, 2016년, 12월 30일자.

81) 2014년 기준 9.5만 명의 중국 관광객과 5천여 명의 서방 관광객이 방북했으며, 북한은 최대 4360만 달러의 외화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북한을 방문한 관광객은 60만을 넘어섰으며, 2020년에는 관광객 2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82) MBC, “행방불명 탈북민 900명 소재는? 재입북 증가 '비상'”, 2017년 7월 24일.

83) “탈북자 재입북 막을 방법 없다.” 『시사저널』 제1449호(2017.07.24.)

84) “탈북민 중 北으로 다시 간 재입북자는 총 26명’ …이유는?”, 『동아일보』, 2017년 10월 23일.

인가. 북한은 형벌 양형에 대해 “공화국 형벌양정은 당과 수령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는 혁명적인 형사재판활동이고,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침해로부터 당과 결사옹위 하는 것이 공화국형벌 양정의 기본목적이다.”고 주장하고, 공개재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현지 공개재판은 범죄자에 대한 재판활동을 통하여 하나를 쳐서 열, 백을 교양할 데 대하여 우리 당의 의도를 철저히 구현”하는데 있다고 밝히고 있다.⁸⁵⁾

따라서 북한은 억류 외국인에 대해 주로 간첩 및 체제전복음모죄를 적용, 무기 노동교화형을 선고해 왔다. 즉, 2015년 12월 임현수 목사에 국가전복 음모죄를 적용,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데 이어 2016년 3월에는 호텔에 부착된 정치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대학생 오토 워비어에게 국가전복음모를 내세우며 무기노동교화형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⁸⁶⁾ 이들은 억류기간 중 고문을 비롯한 각종 인권탄압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Ⅳ-4〉 북한 형법상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죄명	내용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2조(반국가선전, 선동죄)	반국가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85) 황금철, “공화국형벌양정의 본질적 특성”, 『정치법률연구』 루계 제42호(2013), 45-47쪽.

86) 북한은 2014년 5월 30일 김정욱 형법 제60조, 제64조, 제62조, 제221조에 의하여 기소하고,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하였다. 2015년 6월 23일에는 김국기, 최춘길에 대해 형법 제60조, 제64조, 제65조, 제221조로 기소하고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하였다. 한편, 캐나다 목사 임현수에 대해서는 형법 제60조로 기소하고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하였다.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한 괴뢰정보원 첩자 김정욱에 대한 재판진행”, 『조선중앙통신』, 2014년 5월 31일; 반공화국 정탐모략 행위를 감행한 남조선 괴뢰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춘길에 대한 재판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5년 6월 24일; “특대형국가전복음모행위를 감행한 재가나다 목사에 대한 재판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5년 12월 17일.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4조(간첩죄)	공화국 공민이 아닌자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5조(파괴, 침해죄)	반국가목적으로 파괴, 침해행위를 한 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공모하여 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70조(조선민족 적대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 불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북한은 범죄자 인도를 대외관계에서 자주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북한은 범죄자에 대한 기소가 제기 되었거나 또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범죄자인도는 다른 국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되는 대외적인 문제이지만 그 요청에 국가의 자주권과 리익을 침해하는 조건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는 범죄자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국가는 무엇보다 범죄자가 자기 나라 공민이면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⁸⁷⁾

북한은 '48년 제헌 헌법 제28조에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것은 최대의 죄악이며 엄정한 형벌에 의하여 처단된다.”고 규정하였고, 이 조항은 '72년 사회주의헌법 제72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 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로 변경되었으나,⁸⁸⁾ '98년 개정 헌법에서부터는 이 내용

87) 김원, “범죄자인도의 거절조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정치법률연구』 제2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참조.

88) 1995년 이전에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을 경우, 탈북민의 증언에 의하면 '정치범죄'로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처벌 대상이었다. 그러나 제2의 고난이 심화되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월

을 삭제하였다.

'87년 형법 제47조는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하는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전부의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04년 형법에서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으로 처벌이 완화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따라서, 탈북민이 재입북하여 체포된 경우, 형법 제63조 조국반역죄가 적용될 수 있다.⁸⁹⁾ 최하 5년 이상 노동교화형과 죄가 무거운 경우,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자진 월북자의 경우 형법 제4조(조국과 민족반역행위를 누우친 자의 처리원칙)에 따라 “국가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는 조문과 제5조(자수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누우치고 자수한 자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용서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죄를 감형하거나 또는 사면시킬 수 있도록 예외적 조항을 두고 있다. 최근 북한은 재입북 탈북민을 활용 대남 심리전에 적극적으로 활용 중이다.

경자가 속출하자 헌법 및 형법에서 관련 조항을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금순·윤여상, “북한주민의 국경이동과 처벌실태,” 『통일문제연구』 통권 제45호(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06), 264쪽.

89) 조국반역죄는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 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노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V. 결론

북한은 제정 형법 이래 줄곧 정치·형법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1950년에 제정된 형법 제1조에 규정된 임무에 대하여 “형법은 죄를 범한 자에게 본법에 규정한 형벌을 적용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그에 수립된 법률질서를 범죄행위로부터 보위하는 것을 과업으로 한다.”고⁹⁰⁾ 규정한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김일성은 정치와 법과의 상관성에 대해,

“...법은 정치의 한 개의 표현형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를 떠나서는 법을 알수 없고 법을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법은 우리 국가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 국가의 정책은 우리 당의 정책입니다. 우리 당의 정치로선과 정책을 모르고는 법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법률을 집행하는 일꾼들은 우리 당의 정책과 국가의 모든 방침을 실행하는 하나의 정치일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이 혼자 허공에 떠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은 정치의 표현이기 때문에 정치에 복종되어야 하며 그것과 떨어질수 없습니다 ...91)”

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김일성은 항일혁명의 전통과 계급투쟁론, 그리고 반대파와의 권력투쟁을 경험하면서 형법의 사상성 또한 강조하였다.

“...법에만 복종하기 위하여서도 사상성이 필요합니다. 사상관점이 잘못되면 척도를 잘못 정할 수 있습니다. 사상이 잘못된 자는 법에만 복종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고 반혁명을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말로만 《준법성》을

90) 사법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평양: 사법성 사법출판부, 1950), 22쪽.

91) 김일성,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김일성 자적잡 12」(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1), 221쪽.

부르짖어도 소용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준법성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반당중파분자들이 준법성을 위반하고 반혁명분자들을 옹호하여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당적 입장을 떠나서 법의 정신을 근본적으로 왜곡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법일군들에게는 법의 정신을 정확하게 실현하기 위한 사상성이 가장 절실히 필요합니다. 당적사상의 단련은 오직 당조직을 통하여 당생활을 강화하는 데서만 가능합니다....”⁹²⁾

김정일도 김일성의 관점을 승계하여, 체제 수호적 차원에서 형법을 이용하였으며,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조하였다.⁹³⁾

“...사회주의법은 계급투쟁의 무기, 프로레타리아독재의 무기입니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는 사회주의법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만 온갖 적대적요소의 준동을 철저히 막고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수호할수 있습니다. 사회주의법을 약화시키는 것은 계급투쟁을 약화시키고 프로레타리아독재를 약화시키는 것으로 됩니다....”⁹⁴⁾

2011년 12월 17일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따라, 정권을 장악한 김정은은 2016년 5월 36년만에 당대회를 개최하고 공식승계절차를 마무리하였다. 김정은의 등장과 더불어 개정된 2012년 북한형법은 9장 290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형법의 각론분야 개정을 통해 구성요건을 강화한 반면 전반적으로 형기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김정은 시대 법제정비 방향은 변화된 정치상황을 감안 기존법률을 수정 보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92) 김일성, “우리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김일성 저작집 12」(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81), 223쪽.

93) 사회주의법무생활이론은 김정일이 1982년 12월 15일 헌법공포 10주년 기념에 즈음하여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한 후 북한 문헌과 학자들의 주장을 통해 북한사회 전체 구성원들의 생활 전 분야를 포괄하는 생활규범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또한 김정은은 1992년 북한헌법 제 18조 3항에 “국가는 사회주의 법률제도를 완비하고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한다”는 규정을 추가 신설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94) 김정일,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7」(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6), 332쪽.

다.

결론적으로 북한법은 주체사상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 하나이며, 수령과 노동당의 정책을 구현할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즉, 법의 사명은 “수령을 정치적으로 보위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당정책을 관철” 하는데 있으며,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이 자기의 역사적 사명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담보”⁹⁵⁾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북한 형법은 인민이 아니라, 김정은 정권과 사회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복무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95)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사회주의 법에 관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이론」(평양: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1971), 227쪽.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김일성저작집」 제12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0).
-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김규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형사법제」(일본: 사회평론, 1988).
- 김근식, 「형법학 1」(평양: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6).
- 남윤악, 「형사관계 법령집 정비(1970)」(서울: 국토통일원, 1970).
- 대륙연구소 편, 「북한법령집」 제1권(서울: 대륙연구소, 1990).
-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평양: 법률출판사, 2004).
-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평양: 법률출판사, 2006).
-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평양: 법률출판사, 2012).
- 법률출판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전」(평양: 법률출판사, 2016).
- 법무부, 「개정 북한형사법제 해설」(서울: 법무부, 2005)
- 법무부, 「북한형법 주석」(서울: 법무부 통일법제과, 2015).
- 법원행정처, 「북한의 형사법」(서울: 법원행정처, 2006).
- 법제처, 「북한법 개요」(서울: 법제처, 1991).
- 북한인권센터, 「2015 북한인권백서」(서울: 통일연구원, 2015).
- 사법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평양: 사법성 사법출판부, 1950).
-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사회주의 법에 관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리론」(평양: 사회과학원법학연구소, 1971)
- 사회과학출판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리론-법학 3」(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6).
-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손희두, 「북한 법이념의 변화와 남북한 법제협력」(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14).
- 심현상, 「조선형법해설」(평양: 국립출판사, 1957).
- 심형일, 「주체의 법리론」(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이백규,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 「통일과 법률」, 2015년.
- 정기승, 「남북한 헌법의 이해」(서울: 삼광출판사, 2002).
- 조일호, 「조선가족법」(평양: 교육도서출판사, 1958).
- 최동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첫 형법: 민주주의형법전의 체계외 구조적 특성」(사회과학출판사).
- 한락규, 「공화국 형사 립법의 발전」(평양: 국립출판사, 1960).
- 홍규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법제정사」(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6).

2. 논문

- 김경현, “공화국행정법률체도는 당의 로선과 정책집행의 위력한 법적무기”, 「정치법률연구」 제2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 김형성·조재현, “북한헌법 변화의 특징과 전망”, 「성균관법학」 제24권 2호(서울: 성균관대학교, 2012).
- 김도균, “북한 법체계에서의 법개념론과 법치론에 관한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서울: 서울대학교, 2005).
- 김도균, “법적 이익형량의 구조와 정당화 문제”, 「법학」제48권 제2호(서울: 서울대학교, 2007).
- 김영호·김용호, “북한 범죄유형과 실태에 관한 고찰: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 2014).
- 김원, “범죄자인도의 거절조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정치법률연구」 제2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 김일성, “우리 당 사법정책을 관철하기 위하여”, 「김일성 자적잡 12」(평양: 조선노동당출판

- 사, 1981).
- 김정일,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 선집 7」(평양: 노선노동당출판사, 1996).
- 리명일, “우리나라 사회주의헌법은 김일성-김정일헌법,” 「정치법률연구」 제4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 리창세, “공화국형사소송법은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의 위력한 법적무기,” 「정치법률연구」 제2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 박정원, “북한의 입법이론과 체계분석,” 「법학논업」 제26권 제2호(2013).
- 사회주의국가의 립법절차에 대한 일반적 리해,”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05년 2월호.
- 송진호, “북한법 이해의 새로운 모델: 분류와 체계,” 「남북법제분과: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 제2회 아시아법제포럼 발표논문집」(2012).
- 오세인, “북한 형법체제의 특수연구” 동국대 박사학위 논문, 2004.
- 윤대규, “북한사회에서의 법의 성격,” 「북한법연구」 제6호, (서울: 북한법연구회, 2003).
- 이규창, “김정은 시대의 북한법제 동향: 특징과 향후 전망,” 「통일과 법률」, 제17호(2014. 1).
- 이백규, “북한의 사법제도와 형사법 개관,” 「통일과 법률」(서울: 법무부, 2015).
- 이효원, “북한의 형사법과 형집행정제도,” 「한국행정학회 비정기학술발표논문집」 (서울:한국행정학회, 2009).
- 장춘식, “사회주의적 준법의식의 형성발전 단계,” 「정치법률 연구」 제4호(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2008).
- 정연수,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국가사회재산 보호관리를 잘 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 「사회과학」 1983년 제1호(1983).
- 조용춘, “주체의 형법리론이 새롭게 밝힌 공화국 형벌의 적용목적,” 「정치법률연구」 2009년 제4호.
- 조용춘, “주체의 형법리론이 새롭게 밝힌 공화국 형벌의 적용목적,” 「정치법률연구」 4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4).
- 최동진, “형법에 대한 일반적 리해,” 「정치법률연구」 제20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4).

최용보, “통일과정에서의 남북한 형사법 충돌 해결방안,” 「통일과 법률」 제25호(서울: 법무부, 2016).

한인섭, “2004년 북한 형법 개정, 그 내용과 의미” 「법학」 제46권 제1호, 2005년.

허경일, “공화국 법제정법에 규제된 법의 효력순위와 효력관계”, 「정치법률연구」 루계 제43호(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13).

황금철, “공화국형벌량정의 본질적 특성”, 「정치법률연구」 제2호(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2013)

3. 기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2015년 7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78호

제1장 형법의 기본

제1조(형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은 범죄 및 형벌제도를 바로세워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를 보위하고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범죄의 미연방지원칙)

국가는 공민들이 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엄격히 지키며 범죄와의 투쟁에 적극 나서게 하여 범죄를 미리 막도록 한다.

제3조(범죄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자의 처리에서 로동계급원칙을 확고히 견지하고 사회적교양을 위주로 하면서 이에 법적제재를 배합하도록 한다.

제4조(조국과 민족반영행위를 누우친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조국과 민족을 반역한 행위를 한자로 하더라도 조국통일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선 경우에는 과거를 묻지 않으며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도록 한다.

제5조(자수자의 처리원칙)

국가는 범죄를 저지른자라 하더라도 자기의 잘못을 진심으로 누우치고 자수한 자에 대하여서는 관대히 용서하도록 한다.

제6조(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행사책임을 지우는 원칙)

국가는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우도록 한다.

제7조(형벌적용의 원칙)

국가는 범죄행위와 범죄자의 위험성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형벌을 적용하도록 한다.

제8조(공민, 령역, 현실원칙)

이 법은 범죄를 저지른 공화국공민에게 적용한다. 공화국공민이 공화국령역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공화국령역안에서 범죄를 저지른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외교특권을 가진 다른 나라 사람에 대하여서는 그 때마다 외교적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공화국령역밖에서 공화국을 반대하였거나 공화국공민을 침해한 다른 나라 사람에게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9조(불소급 및 소급원칙)

범죄를 저지른자에게는 그 범죄를 저지를 당시의 형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종전 형법에서 범죄로 보던 행위를 이 법에서 범죄로 보지 않았거나 형벌을 낮춘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일반규정

제1절 범죄

제10조(범죄의 개념)

범죄는 국가주권과 사회주의제도, 법질서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형벌을 줄 정도의 위험한 행위이다.

제11조(형사책임나이)

범죄를 저지를 당시 14살이상 되는자에 대하여서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2조(정신병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에 대한 처리)

만성정신병, 일시적인 정신이상때문에 자기의 행위를 가리지 못하였거나 통제할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서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의료처분을 적용할수 있다.

술에 취하여 범죄를 저지른자에 대하여서는 앞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정신병상태에 있는 범죄자의 처리)

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자가 수사, 예심, 재판당시 정신병 상태에 있을 경우에는 의료처분을 적용하며 회복되었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14조(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 일반조건)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가벌성이 작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5조(정당방위)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 및 사회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 또는 자기자신의 적법적이익을 침해하는 위급한 범죄를 막기 위한 행위로서 그것이 방위의 정도를 지나치게 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6조(긴급피난)

이 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급한 사태를 피하는데, 그 길밖에 없었으며 그렇게 한 결과 입은 손실이 보호한 리익보다 적을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7조(자발적으로 중지한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준비하거나 저지르다가 도중에 스스로 완전히 그만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실지로 한 행위가 다른 무거운 범죄의 표징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한 형사책임을 지울수 있다.

제18조(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인신을 침해한자에 대한 형사책임)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그의 인신을 침해한자에 대하여서는 가벌성이

작을 경우 형사적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19조(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

가족, 친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서는 용서하여줄데 대한 피해자 또는 피해자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제20조(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한 형사책임은 범죄의 위험성정도, 범죄의 실행정도,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참작하여 지운다.

범죄의 준비와 미수에 대하여서는 기수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범죄의 준비는 미수, 범죄의 미수는 기수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제21조(조직체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조직체의 주모자와 추종자에 대하여서는 그 조직체가 목적인 범죄에 해당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우며 주모자는 무겁게 처벌한다.

제22조(단순형태의 공범자들에 대한 형사책임)

단순형태의 공범사건에서 추진자, 방조자에 대하여서는 실행자에게 적용하는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

추진자는 실행자와 같게 또는 무겁게, 방조자는 실행자보다 가볍게 처벌한다.

제23조(특수적표징을 요구하는 범죄를 저지른 공범자에 대한 형사책임)

특수적표징을 요구하는 범죄의 실행자가 해당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자와 공모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그러한 표징을 갖추지 못한 다른 실행자, 추진자, 방조자도 공범자로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4조(은닉범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를 저지를 당시에는 관여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른 다음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5조(불신고범에 대한 형사책임)

범죄가 준비되고있거나 저질러진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

은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6조(방임범에 대한 형사책임)

해로운 긴급한 사태를 능히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두어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에 대하여서는 이 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2절 형벌

제27조(형벌의 종류)

형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무기로동교화형
3. 유기로동교화형
4. 로동단련형
5. 선거권박탈형
6. 재산몰수형
7. 벌금형
8. 자격박탈형
9. 자격정지형

제28조(기본형벌과 부가형벌)

사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기본형벌이다.

선거권박탈형, 재산몰수형, 벌금형, 자격박탈형, 자격정지형은 부가형벌이다.

제29조(사형)

사형은 범죄자의 육체적생명을 박탈하는 최고의 형벌이다.

범죄를 저지를 당시 18살에 이르지 못한자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줄수 없으며 임신녀성에 대하여서는 사형을 집행할수 없다.

제30조(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은 범죄자를 교화소에 넣어 로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집행기간에는 국민의 권리의 일부가 정지된다.

유기로동교화형기간은 1년부터 15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형기를 합산할 경우에도 유기로동교화형기간은 15년을 넘을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어있는 기간 1일을 유기로동교화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제31조(로동단련형)

로동단련형은 범죄자를 일정한 장소에 보내어 로동을 시키는 형벌이다.

로동단련형집행기간에는 국민의 권리가 보장된다.

로동단련형기간은 6개월부터 1년까지로 한다. 범죄를 병합하거나 형기를 합산할 경우에도 로동단련형의 기간은 1년을 넘을수 없다.

범죄자가 구속되어 있는 기간 1일을 로동단련형 기간 2일로 계산한다.

제32조(선거권박탈형)

선거권박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로부터 일정한 기간 선거할 권리를 빼앗는 형벌이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선거권박탈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선거권박탈형기간은 5년이며 유기로동교화형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33조(벌금형)

벌금형은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에게 물질적제재를 가하는 형벌이다.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벌금부과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벌금형에 따르는 벌금액수는 범죄행위의 엄중성정도에 따라 재판소가

정한다.

제34조(재산몰수형)

재산몰수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재산을 무상으로 국가에 넘기는 형벌이다.

재산몰수형판결을 집행할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가족이 최저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식량과 일용필수품, 돈을 남겨놓는다.

제35조(재산몰수형 취소 및 사건기각시 재산처리)

재산몰수형이 취소되었거나 사건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몰수하였던 재산을 돌려준다.

제36조(재산몰수당한자의 빚처리)

재산을 몰수당한자가 재산담보처분이 있기 전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준다. 그러나 재산담보처분이 있는 다음에 진 빚에 대하여서는 몰수한 재산으로 물어주지 않는다.

제37조(자격박탈형)

자격박탈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가지고있던 일정한 자격을 영원히 빼앗는 형벌이다.

일정한 자격을 고의적인 범죄를 저지르는데 리용한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자격박탈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제38조(자격정지형)

자격정지형은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가지고있던 일정한 자격을 일시적으로 빼앗는 형벌이다.

일정한 자격을 가진자가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사건을 심리할 경우에는 자격정지문제를 함께 심리하여야 한다.

자격정지형기간은 3년이며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계산한다.

제39조(형벌의 량정)

형벌량정은 범죄의 성격, 목적과 동기, 수단과 방법, 실행정도, 범죄적

결과, 공모관계, 범죄자의 위험성정도 같은것을 참작하여 한다. 이 경우 해당 조, 항에 규정된 형벌의 한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40조(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주동분자인 경우
2. 여러번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 잔인한 수단과 방법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전시 또는 재해상태를 리용하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제41조(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

형벌량정에서 가볍게 보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범죄의 피동분자인 경우
2. 국가에서 맡겨준 일을 더 잘하려고 하다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 강한 정신적자극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4. 정당방위, 긴급피난의 정도를 넘었을 경우
5. 자백하였을 경우
6. 특출한 공로를 세운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7. 략취하였거나 파손한 재산을 스스로 보상하였거나 원상복구하였을 경우
8.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
9. 중한 범죄를 적발하는데 협력한 경우

제42조(형벌의 무겁게 또는 가볍게 적용하는 범위)

형벌량정에서 무겁게 또는 가볍게 보는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주어야 할 형벌의 절반정도의 범위안에서 그 위험성정도에 맞게 무겁게 또는 가볍게 줄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된 형벌의 최고 또는 최저한도보다 높게 또는 낮게 줄수 없다.

제43조(법정형의 최저한도보다 형벌을 낮게 적용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있는 형벌의 최저한도보다 더 낮게 형벌을 주어

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규정되어있는 형벌보다 낮게 줄수 있다.

제44조(범죄의 병합조건)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가 각각 독립적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할수 있을 경우에는 병합한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범죄들이 결합되어 하나의 범죄로 되었거나 어느 한 형태의 범죄가 다른 형태의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필수적전제로 되었을 경우에는 병합할수 없다.

제45조(범죄병합시의 형벌량정)

한 범죄자가 저지른 여러 형태의 범죄를 함께 재판할 경우에는 매 범죄별로 형벌을량정한 다음 제일 높이량정한 조항의 형벌에 나머지조항의 형벌을 절반정도 합한다. 이 경우 병합한 범죄에 해당하는 부가형벌은 기본형벌과 함께 적용한다.

판결의 선고는 이 조로 한다.

제46조(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계산)

서로 다른 종류의 형벌기간을 하나의 형벌기간으로량정할 경우에는 제재의 도수가 높은 종류의 형벌로 하며 로동단련형기간 2일을 유기로 동교화형기간 1일로 계산한다.

제47조(형벌집행이 끝나기 전에 저지른 범죄와 숨긴 범죄에 대한 형벌량정)

유죄판결을 받은자가 판결이 확정된 다음 형벌의 집행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그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을량정하여 남은 형기에 합한다.

제48조(《이상》, 《이하》에 대한 해석)

이 법에서 형벌기간을 지정한 《이상》, 《이하》는 해당 수를 포함한다. 형벌기간은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따라 년뿐아니라 개월까지 정할수 있다.

제49조(형벌집행기간계산)

형벌집행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형벌기간이 마감되는 날까지로

한다.

범죄자가 구속되어있는 기간은 이 법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형벌집행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제50조(사회적교양처분의 적용조건)

일반범죄를 저지른자를 그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사회적교양의 방법으로도 고칠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할 수 있다.

제51조(사회적교양처분의 법률적효과)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가 법이 정한 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은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사회적교양처분을 받았던 범죄에 대하여 형벌을량정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 또는 숨긴 범죄에 대하여량정한 형벌에 합한다.

제52조(집행유예조건과 기간)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은자의 개준성정도, 범죄의 위험성정도에 비추어 그를 교화소에 보내여 로동교화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3년부터 5년까지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수 있다.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을 받은자가 선고받은 형벌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내는 경우에도 3년부터 5년까지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제53조(집행유예의 법률적효과)

집행유예를 받은자가 집행유예기간에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에게 내렸던 판결의 집행이 끝난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새로운 범죄를 저질렀거나 숨긴 범죄가 드러났을 경우에는 유예한 형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새로 저지른 범죄나 숨긴 범죄에 대하여량정한 형벌에 합한다.

제54조(특사, 대사)

유죄판결을 받은자의 형벌은 특사 또는 대사로 면제된다.

특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실시한다.

대사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실시한다.

제55조(형기단축 및 만기전석방)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판결을 받은자가 형집행기간에 생활을 모범적으로 한 경우에는 형기를 줄여줄수 있다.

무기로동교화형,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을 받은자가 완전히 교양개조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기로동교화형, 로동단련형은 받은 형기의 절반이, 무기로동교화형은 10년이 지난 다음 형벌집행을 면제하여줄수 있다.

제56조(형벌집행이 끝난자의 법적지위)

특사, 대사를 받은자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자에 대하여서는 특사, 대사를 받은 날 또는 형벌집행이 끝난 날부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자와 같이 법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57조(형사소추시효기간)

범죄를 저지른 때부터 다음의 기간이 지나면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1. 1년까지의 로동단련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3년
2. 3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5년
3. 3년이상 5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8년
4. 5년이상 10년까지의 로동교화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2년
5. 10년이상의 형벌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15년
6.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줄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서는 20년

제58조(형사소추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범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와 고의적중살인죄에 대하여서는 형사소추시효기간에 관계없이 형사책임을 지운다.

제59조(형사소추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되는 사유)

이 법 제57조에 규정된 기간이 넘기 전에 범죄자가 새로운 범죄를 저

질렀거나 예심 또는 재판을 회피하였거나 수사시작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형사소추시효기간이 새로 계산된다.

제3장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

제1절 반국가범죄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

반국가적목적으로 정변, 폭동, 시위, 습격에 참가하였거나 음모에 가담한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1조(테로죄)

반국가목적으로 간부들과 인민들을 살인, 랍치하였거나 그들에게 상해를 입힌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2조(반국가선전, 선동죄)

반국가목적으로 선전, 선동행위를 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3조(조국반역죄)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하였거나 비밀을 넘겨준것과 같은 조국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4조(간첩죄)

공화국공민이 아닌자가 우리 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

지, 수집, 제공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5조(파괴, 암해죄)

반국가목적으로 파괴, 암해행위를 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제66조(무장간섭 및 대외관계단절사촉죄)

다른 나라 사람이 공화국에 대한 무장간섭을 하게 하거나 외교관계를 끊어버리게 하거나 공화국과 체결한 조약을 파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에 있는 집단을 추겼거나 자금을 대준 경우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67조(외국인에 대한 적대행위죄)

공화국과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목적으로 공화국에 체류하고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한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반민족범죄

제68조(민족반역죄)

조선민족으로서 제국주의의 지배밑에서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하였거나 제국주의자들에게 조선민족의 리익을 팔아먹은 민족반역행위를 한자는 5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

에 처한다.

제69조(조선민족해방운동탄압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인민의 민족해방운동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탄압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0조(조선민족적대죄)

다른 나라 사람이 조선민족을 적대시할 목적으로 해외에 상주하거나 체류하는 조선사람의 인신, 재산을 침해하였거나 민족적불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절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 불신고, 방임죄

제71조(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은닉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를 저지른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2조(반국가 및 반민족범죄에 대한 불신고죄)

반국가 및 반민족범죄나 범죄자라는것을 알면서 그것을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3조(반국가범죄에 대한 방임죄)

반국가범죄를 저지르고있다는것을 알면서 그것을 긴급히 막는데 필요한 대책을 능히 세울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둔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4장 국방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74조(명령, 결정, 지시집행태만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 국방위원회 위원장,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명령, 최고사령관 명령, 당중앙위원회 명령, 결정, 지시, 국방위원회 결정, 지시를 제때에 정확히 집행하지 않았거나 형식적으로 집행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명령, 결정, 지시를 전혀 집행하지 않았거나 제1항의 행위로 특히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5조(전략예비물자의 조성 및 전시생산준비태만죄)

전략예비물자의 조성과 전시생산준비를 하지 않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6조(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략취죄)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를 략취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대량의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를 략취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7조(무기, 탄약비법휴대, 양도죄)

무기, 탄약을 비법적으로 가지고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8조(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고의적파손죄)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와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또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파손시켰거나 방화, 폭파의 방법으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79조(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과실적파손죄)

대량의 무기, 탄약, 전투기술기재 또는 중요한 군사시설을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0조(군사경비근무질서위반죄)

민간군사훈련에 동원된자가 경비근무질서를 어겨 경비대상물에 피해를 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1조(군사임무수행방해죄)

경비근무, 차단근무, 단속근무, 기통임무 같은 군사임무수행을 방해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2조(군수품분실죄)

군수품을 잃어버린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3조(군수품매매죄)

군수품이라는것을 알면서 팔았거나 산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84조(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 죄)

군수품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료, 연료, 전력, 자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지 않았거나 그 질을 보장하지 못하여 군수품생산에 지장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5조(군수품을 오작품, 불합격품으로 생산한 죄)

군수품생산부문 일군이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제품규격, 제품검사에 관한 질서를 어기고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6조(군수품생산용자재, 군수품류용죄)

군수품생산부문 관리일군이 군수품생산용자재와 군수품을 류용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7조(군사복무동원기피죄)

군사복무동원을 기피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전시 또는 준전시에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88조(기피자, 탈영자은닉죄)

군사복무동원기피자, 탈영자라는것을 알면서 숨겨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89조(군인으로 가장한 죄)

군인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는 1년 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90조(국방비밀루설죄)

국방비밀을 루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중요한 국방비밀을 루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5장 사회주의경제를 침해한 범죄

제1절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소유를 침해한 범죄

제91조(국가재산훔친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훔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2조(국가재산빼앗은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빼앗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6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6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3조(국가재산속여가진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속여가진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

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4조(국가재산횡령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의무를 실행하는자 또는 관리일군이 직무상 또는 일시적위임에 의하여 보관관리하고있는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5조(국가재산대량략취죄)

이 법 제91조-제94조에 지적된 여러가지 행위를 하여략취한 총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6조(국가재산강도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협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강도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강도하였거나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강도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7조(특히 무거운 형태의 국가재산략취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략취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8조(국가재산공동탐오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의 공동탐오를 지시하였거나 조직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99조(국가재산고의적파손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중요한 생산수단이나 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방화, 폭파의 방법으로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0조(국가재산과실적파손죄)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과실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경제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제101조(화폐위조 및 위조화폐사용죄)**

공화국화폐와 외국화폐가 위조되었다는것을 알면서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화폐를 위조하였거나 대량의 위조된 화폐를 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화폐를 위조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무기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2조(증권위조 및 위조증권사용죄)

국가의 유가증권을 위조하였거나 대량의 위조된 증권을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유가증권을 위조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위조증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3조(무현금결제수단의 비법발급, 결제, 사용죄)

무현금결제수단을 비법적으로 발급하였거나 결제하여주었거나 사용하여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4조(대부질서위반죄)

은행일군이 비법적으로 현금을 대부하여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5조(화폐교환질서위반죄)

화폐교환질서를 어겨 국가에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6조(화폐매매죄)

리기적목적밑에 공화국은행에서 바꿀수 있는 화폐를 매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07조(외화관리질서위반죄)

외화관리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8조(외화사용질서위반죄)

외화사용질서를 위반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09조(탈세죄)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이 고의적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0조(국가납부질서위반죄)

국가납부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국가납부금을 바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1조(암거래죄)

개인이 암거래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2조(거간죄)

거간행위를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3조(고리대죄)

고리대행위를 상습적으로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4조(개인의 기업 및 영업죄)

개인이 기업 및 영업활동을 하여 대량의 리득을 얻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5조(무역 및 외화벌이기관, 단체의 상적행위죄)

무역 및 외화벌이기관, 단체의 관리일군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물자를 가지고 비법적으로 상적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16조(법인행세죄)

법인으로 가장하고 경제거래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17조(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침해죄)

특허권, 상표권, 공업도안권, 원산지명권을 침해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8조(귀금속, 유색금속밀수, 밀매죄)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을 밀수, 밀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귀금속 또는 유색금속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19조(밀수죄)

밀수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밀수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를 해당

부문 공무원이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0조(수출입질서위반죄)

비법적으로 수출입행위를 조직하였거나 지시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1조(대외경제활동질서위반죄)

대외경제활동을 무책임하게 하여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2조(비법적인 외화원천동원죄)

개인들에게 비법적으로 돈 또는 물건을 주고 외화원천동원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가가 통제하는 물건을 외화원천으로 동원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3조(비법적인 작업 또는 수송죄)

기관, 기업소, 단체의 기계설비와 운수수단을 리용하여 비법적으로 작업 또는 수송을 하여주고 특히 대량의 돈 또는 물건을 받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24조(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위반죄)

철도, 수상, 항공운수질서를 어겨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주었거나 그 정상적운행에 지장을 주었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기차, 배, 비행기를 전복, 파괴시켰거나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5조(화차, 짐배리용질서위반죄)

화차, 짐배의 리용질서를 어겨 화차, 짐배를 상당한 기간 지체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26조(운수수단운행방해죄)

운수수단의 운행을 방해하여 지체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7조(인민경제계획규률위반죄)

지방 또는 기업소지표계획을 되는대로 세웠거나 계획을 고쳤거나 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하였거나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아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에 지장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중앙지표계획을 되는대로 세웠거나 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하였거나 계획대로 집행하지 않아 인민경제의 계획적, 균형적발전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8조(계약규률위반죄)

계약규률을 어겨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중앙지표계획에 기초한 계약규률을 어겨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29조(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위반죄)

국가예비물자의 공급, 보관, 리용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0조(마약, 독약, 폭발물의 보관, 공급질서위반죄)

마약이나 독약, 폭발물에 대한 보관 및 공급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1조(비법적인 경제관리죄)

비법적으로 경제관리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32조(국가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주었거나 빌려준 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개인에게 비법적으로 꾸어주었거나 빌려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3조(원료, 자재, 자금, 설비의 류용, 량비죄)

원료, 자재, 자금, 설비를 류용, 량비하여 경제관리운영에 지장을 주었거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에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4조(국가재산의 부패변질, 류실죄)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재산을 무책임하게 보관, 관리하여 대량의 재산을 부패변질, 류실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특히 대량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재산을 부패변질, 류실시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5조(설비, 물자, 자재, 자금의 비법처분죄)

기관, 기업소, 단체사이에 비법적으로 설비, 물자, 자재, 자금을 주었거

나 받았거나 바꾸었거나 팔고산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36조(재산을 약취하여 기관에 넘겨준 죄)

대량의 재산을 약취하여 자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썼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재산을 약취하여 또는 빼앗거나 강도의 방법으로 재산을 약취하여 자기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썼거나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7조(오작품, 불합격품생산죄)

기술규정, 표준조작법, 규격, 공정검사에 관한 질서를 어겨 대량의 오작품, 불합격품을 생산하였거나 생산되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38조(품질감독질서위반죄)

품질감독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39조(생산수단수리질서위반죄)

생산수단수리규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0조(설비점검, 보수질서위반죄)

설비점검, 보수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1조(오작설계, 오작시공죄)

오작설계를 하였거나 오작시공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2조(국가건물리용질서위반죄)

국가건물리용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3조(준공검사 및 리용허가질서위반죄)

건설물의 준공검사와 기계, 설비의 리용허가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4조(준공검사 및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물 또는 기계, 설비를 리용하게 한 죄)

준공검사와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설물 또는 기계, 설비를 리용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5조(실리가 없는 시설건설, 기계설비제작죄)

경제적으로 실리가 없거나 매우 적다는것을 알면서 시설을 건설하였거나 기계설비를 제작하여 특히 대량의 자재와 자금, 로력을 낭비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6조(국가살림집리용질서위반죄)

국가살림집리용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47조(농업생산질서위반죄)

농업생산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8조(수의방역 및 사양관리질서위반죄)

수의방역 또는 사양관리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49조(양어사업질서위반죄)

양어사업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0조(천해양식질서위반죄)

천해양식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1조(상품공급질서위반죄)

상품을 제때에 인수하지 않았거나 상품공급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커다란 불편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2조(상품판매질서위반죄)

상품판매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3조(량정질서위반죄)

량정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4조(밀주죄)

장사 또는 물물교환의 목적으로 밀주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55조(계량기구량목위반죄)

계량기구의 눈금과량을 비법적으로 고친자 또는 계량기구의 눈금과량이 틀린다는것을 알면서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6조(전력공급질서위반죄)

전력공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7조(전력사용질서위반죄)

전력사용질서를 어겨 대량의 전력을 낭비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8조(체신사업질서위반죄)

체신사업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59조(해사감독질서위반죄)

배설계의 심의, 배의 등록과 검사, 선원의 등록과 기술자격심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0조(해난구조의 무기피죄)

해난구조를 의뢰받은자가 위험에 처한 사람, 배, 짐을 구조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1조(가격제정질서위반죄)

가격제정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62조(난방열도용죄)

비법적으로 난방열을 도용하여 난방열공급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63조(주민연료공급질서위반죄)

주민연료확보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였거나 공급질서를 어겨 인민생활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3절 국토관리 및 환경보호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164조(토지이용질서위반죄)

토지이용질서를 어긴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5조(수해방지태만죄)

수해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66조(지하자원개발, 채굴 및 제련질서위반죄)

지하자원의 개발, 채굴 및 제련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67조(개인의 광석채취, 제련죄)

개인이 광석을 채취, 제련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8조(산림조성, 보호, 리용질서위반죄)

산림조성, 보호, 리용질서를 어겨 산림자원에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69조(산림고의적파손죄)

산림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주요대상지의 산림을 파손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0조(과실적산불죄)

과실로 산불을 일으켜 산림자원에 손실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

형에 처한다.

대량 또는 주요대상지의 산림자원에 손실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1조(비법적인 산개간죄)

비법적으로 산을 개간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72조(수산 및 동식물자원보호질서위반죄)

허가없이 또는 금지된 시기와 장소 혹은 금지된 수단과 방법으로 물고기와 리로운 동식물을 잡았거나 채취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73조(환경보호질서위반죄)

환경보호질서를 어겨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4조(하천보호질서위반죄)

하천보호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75조(도로관리질서위반죄)

도로를 정상적으로 수리, 정비, 보수하지 않아 운수수단의 운행에 지장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4절 로동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176조(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지 않은 죄)

로동보호 및 로동안전시설을 갖추어주지 않고 로동을 시켜 사람이 중상을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

오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7조(로동안전질서위반죄)

로동안전질서를 어겨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8조(화재방지규정위반죄)

화재방지대책을 세우지 않아 화재, 폭발 같은 엄중한 사고를 일으켜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79조(교통사고죄)

자동차 같은 륜전기재를 운전하는자가 차의 통행질서를 어겨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여러명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하였거나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0조(사회주의분배질서위반죄)

로동의 량과 질에 대한 평가를 고의적으로 그릇되게 하여 대량의 분

배, 생활비, 상금을 부당하게 적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81조(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 죄)

로동할 나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에게 로동을 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82조(여성에게 금지된 로동을 시킨 죄)

여성에게 법적으로 금지된 로동을 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6장 사회주의문화를 침해한 범죄

제183조(퇴폐적인 문화반입, 류포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매체 같은것을 허가없이 다른 나라에서 들여왔거나 만들었거나 류포하였거나 비법적으로 보관하고있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4조(퇴폐적인 행위를 한 죄)

퇴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그림, 사진, 도서, 록화물과 전자매체 같은것을 보았거나 들었거나 재현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상습적으로 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5조(적대방송청취, 적지물수집, 보관, 류포죄)

반국가목적이 없이 적들의 방송을 들었거나 적지물을 수집, 보관하였거나 류포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대량의 적지물을 수집, 보관, 류포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6조(력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고의적파손죄)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력사유적과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고의적으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7조(력사유적, 유물, 명승지, 천연기념물과실적파손죄)

국가가 보존관리하는 력사유적과 유물, 천연기념물을 과실로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88조(력사유적도굴죄)

력사유적을 도굴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89조(력사유물밀수, 밀매죄)

력사유물을 밀수, 밀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국보력사유물을 밀수, 밀매하였거나 준국보력사유물을 여러번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0조(저작, 발명, 창의고안목살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밑에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그릇되게 평가하여 목살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1조(저작, 발명, 창의고안도용죄)

리기적목적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 발명, 창의고안을 자기 이름으로 발표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2조(컴퓨터망침입죄)

국가관리, 국방건설,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컴퓨터망에 침입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3조(정보파손죄)

컴퓨터 같은 정보처리장치에 보존된 중요정보를 파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4조(허위정보 입력, 류포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컴퓨터망에 허위정보를 입력시켰거나 류포시켜 정보처리에 혼란을 조성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5조(후비양성질서위반죄)

학교추천과 입학, 실력평가와 배치사업을 부당하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6조(체육선수선발질서위반죄)

중요체육경기에 출전한 선수선발을 바로하지 못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197조(어린이보호, 관리질서위반죄)

탁아소, 유치원일군이 어린이보호, 관리질서를 어겨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어린이를 죽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8조(의료사고죄)

의료일군이 치료와 간호를 불성실하게 하였거나 잘못하여 환자가 중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99조(치료거부죄)

의료일군이 특별한 이유없이 왕진과 치료를 거부하여 환자를 죽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00조(비법의료죄)

의료일군이 아닌자가 또는 의료일군이라 하더라도 의무활동외에 리기적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여 환자가 중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1조(불량의약품생산죄)

의약품제조를 잘못하였거나 의약품검사를 무책임하게 하여 환자가 중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환자를 죽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2조(가짜의약품, 식료품제조, 판매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해로운 가짜의약품, 식료품이라는것을 알면서 만들어 판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사람이 중병에 걸리게 하였거나 장애자로 되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가짜의약품, 식료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3조(위생방역사업태만죄)

위생방역사업을 무책임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4조(국경검역사업태만죄)

국경을 통과하는 인원과 물품, 동식물검역을 무책임하게 하여 전염병 또는 병해충이 들어오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5조(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의 취득, 매매, 리용죄)

병치료 또는 리기적목적으로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 같은것을 취득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병치료를 목적으로 사람의 장기, 태아, 혈액 같은것을 매매, 리용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6조(비법아편재배, 마약, 독성물질제조죄)

비법적으로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아편을 재배하였거나 마약을 제조한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207조(비법마약사용죄)

비법적으로 마약을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08조(마약 밀수, 거래죄)

마약을 밀수, 밀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마약을 밀수, 거래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마약을 밀수, 밀매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7장 일반행정관리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1절 일반행정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209조(집단적소동죄)

국가기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소동을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을 파괴한것 같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항의 행위를 한 주동분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0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 협박, 모욕의 방법으로 관리일군의 직무집행을 방해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해당 부문의 사업에 혼란을 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1조(허위풍설날조, 류포죄)

국가에 대한 불신을 조성할수 있는 허위풍설을 꾸며냈거나 류포시켜 사회적혼란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12조(공인비법사용, 위조죄)

공인을 비법적으로 사용하였거나 위조하였거나 위조한것인줄 알면서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13조(문서, 증명서의 비법처분, 위조, 사용죄)

리기적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문서, 증명서를 감추었거나 처분하였거나 위조하였거나 위조한것인줄 알면서 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4조(출판질서위반죄)

출판질서를 어기고 출판물을 인쇄, 발행, 보급하였거나 타자, 복사하였거나 전자매체의 제작, 보급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15조(폭발물비법제조, 휴대, 사용, 양도죄)

폭발물을 비법적으로 만들었거나 가지고있었거나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폭발물을 비법적으로 만들었거나 가지고있었거나 사용하였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었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

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6조(위험성물질수송질서위반죄)

방사성, 폭발성, 인화성, 독성물질수송질서를 어기고 그것을 운반하였거나 부쳤거나 부쳐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방사성, 폭발성, 인화성, 독성물질을 비법적으로 운반하였거나 부쳤거나 부쳐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7조(경비근무질서위반죄)

경비근무를 어겨 경비대상물에 피해를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8조(독립임무수행태만죄)

관리일군이 아닌자가 자기의 독립적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19조(고의적비밀루설죄)

국가비밀을 고의적으로 루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중요한 국가비밀을 루설하였거나 국가비밀루설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0조(과실적비밀루설죄)

국가비밀을 과실로 루설하였거나 국가비밀문서를 잃어버린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1조(비법국경출입죄)

비법적으로 국경을 출입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2조(비법적인 국제통신죄)

비법적으로 국제통신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3조(령공, 령해침입죄)

다른 나라 사람이 비행기 또는 배를 몰고 허가없이 공화국령공, 령해에 들어왔거나 령공, 령해밖으로 나갔거나 지정된 항로, 비행고도를 어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4조(거짓신고, 진술죄)

범죄에 대한 거짓신고를 하였거나 수사, 예심, 재판심리에서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5조(증인협박죄)

거짓진술, 감정, 통역, 해석을 하도록 폭행, 협박, 회유, 기만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6조(사건관계자에 대한 복수죄)

복수할 목적으로 사건관계자에게 구타, 폭행, 모욕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7조(일반범죄은닉죄)

유기로동교화형이상의 형벌에 처할수 있는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고의적살인, 강도행위를 저지른 범죄자 또는 범죄의 흔적을 감추어준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28조(일반범죄불신고죄)

국가재산강도죄, 고의적중살인죄, 개인재산강도죄를 준비하고있거나 저지른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에 알리지 않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29조(도주죄)

구속중에 있거나 형벌집행중에 있는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시설을 파괴하였거나 폭행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
에 처한다.

제230조(뢰물죄)

대량의뢰물을 받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뢰물을 받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1조(정치협잡죄)

정치협잡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극히 엄중하나 정치협잡행위를 한 경우에
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2조(담보처분한 재산비법처분, 리용죄)

담보처분한 재산을 비법적으로 처분하였거나 리용한자는 1년이하의 로
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33조(부당한 신소죄)

리기적목적 또는 비렬한 동기에서 과장, 날조된 신소를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34조(대외적권위훼손죄)

우리 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에서 공화국의 대외적권위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
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절 직무상범죄

제235조(직권람용죄)

관리일군이 리기적목적으로 직권을 람용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6조(월권행위죄)

관리일군이 상급의 권한에 속하는 행위를 그의 승인없이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37조(직무태만죄)

관리일군이 상급으로부터 받은 명령, 지시 또는 직무상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되는대로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8조(물질적부담을 시킨 죄)

지원, 후원, 꾸리기, 사업보장의 명목으로 물질적부담을 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물질적부담을 시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39조(신소, 청원처리질서위반죄)

관리일군이 국민의 신소, 청원을 묵살하였거나 그 처리를 부당하게 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40조(국가기관권위훼손죄)

관리일군이 위법행위를 하였거나 처신을 잘못하여 국가기관의 권위를 훼손시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1조(강제수단 비법적용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사람을 체포, 구속, 구인하였거나 몸 또는 살림집을 수색하였거나 재산을 압수, 몰수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번 하였거나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2조(사건과장, 날조죄)

법일군이 비법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심문하였거나 사건을 과장, 날조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공모하여 하였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부당한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3조(비법석방 및 사건약화죄)

법일군이 비법적으로 범죄자를 놓아주었거나 범죄사실을 가볍게 하여 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4조(부당한 판결, 판정죄)

재판일군이 부당한 판결, 판정을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5조(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 죄)

정당한 리유없이 확정된 판결, 판정을 집행하지 않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8장 사회주의공동생활질서를 침해한 범죄

제246조(불량자적 행위죄)

파렴치한 불량자적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불량자적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패를 지어 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한 주동분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7조(패싸움죄)

집단적으로 패싸움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무기 또는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사람이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대량의 재산파괴와 같은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8조(미성인범죄추진 죄)

17살에 이르지 못한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추겼거나 범죄에 가담하게 하였거나 불량자로 되게 한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49조(매음죄)

매음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0조(음탕한 행위죄)

여러 남녀가 모여 음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1조(직권참용죄)

관리일군이 아닌자가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였거나 관리일군이 다른 관리일군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52조(거짓행세죄)

검열, 단속일군으로 가장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53조(실력행사죄)

자기의 인신상 또는 재산상권리를 법에 의거하지 않고 실력을 행사하여 차지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4조(명예, 칭호참용죄)

리기적목적으로 국가적명예나 칭호를 참용하여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여러번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55조(도박죄)

돈 또는 물건을 대고 도박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6조(미신행위죄)

돈 또는 물건을 받고 미신행위를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7조(비법혼인 및 가정파탄죄)

탐욕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여러 대상과 혼인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58조(늙은이, 어린이보호책임회피죄)

늙은이, 어린이 또는 로동능력이 없는 사람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자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여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59조(양로사업질서위반죄)

양로사업을 잘하지 않아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0조(학대괄시죄)

자기의 보호밑에 있는 사람을 학대괄시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보호대상자가 장애자로 되게 하였거나 중상해를 입게 하였거나 사망되게 하였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1조(습득물횡령죄)

주는 돈 또는 물건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62조(사례금을 바치지 않은 죄)

공무원이 거래과정에 받은 사례금을 국가기관에 바치지 않고 가진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3조(략취물건거래죄)

략취한 물건인줄 알면서 받아가졌거나 샀거나 팔아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64조(묘파괴죄)

묘를 고의적으로 파괴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많은 묘를 파괴한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5조(엄중한 결과발생방임죄)

사람이 죽을 위험에 처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줄수 있다는것을 알면서 해당 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알리지 않았거나 능히 구원하거나 막을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 사람을 죽게 하였거나 특히 대량의 재산적손실을 가져오게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9장 공민의 인신과 재산을 침해한 범죄

제1절 생명, 건강, 인격을 침해한 범죄

제266조(고의적중살인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에서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인자는 10년 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267조(고의적경살인죄)

탐욕, 질투 그밖의 비렬한 동기가 없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자는 3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8조(발작적격분에 의한 살인죄)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사람을 죽인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명을 죽인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69조(정당방위초과살인죄)

정당방위의 정도를 넘었거나 직무집행상, 의무실행상 필요한 정도를 넘는 행위를 하여 사람을 죽인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70조(과실적살인죄)

사람을 과실로 죽인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과실로 여러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1조(고의적증상해죄)

고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에 위협할 정도의 증상을 입혔거나 눈, 귀 그 밖의 기능을 잃게 하였거나 얼굴에 흉한 허물을 남겼거나 정신병을 일으키게 하였거나 로동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린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잔인한 방법으로 하였거나 피해자가 죽게 하였거나 여러 사람에게 증상을 입힌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2조(발작적격분에 의한 증상해죄)

피해자의 폭행 또는 심한 모욕때문에 일어난 발작적격분상태에서 사람에게 증상해를 입힌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여러 사람에게 증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3조(과실적증상해죄)

사람에게 과실로 증상해를 입힌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4조(고의적경상해죄)

사람에게 고의적으로 경상해를 입힌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75조(폭행죄)

사람에게 폭행을 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76조(비법자유구속죄)

비법적으로 사람의 자유를 구속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77조(어린이를 훔치거나 감춘죄)

리기적목적 또는 복수적동기에서 어린이를 훔쳤거나 감춘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어린이를 훔쳤거나 감춘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8조(유괴죄)

리기적목적에서 사람을 유괴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 사람을 유괴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79조(강간죄)

폭행, 협박하였거나 또는 구원을 받지 못할 상태를 리용하여 녀성을 강간한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른간하였거나 앞항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혔거나 죽게 한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0조(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 죄)

복종관계에 있는 녀성을 강요하여 성교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를 여러 녀성에게 하였거나 녀성을 타락 또는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1조(미성인성교죄)

15살에 이르지 못한 미성인과 성교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성교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2조(모욕 및 명예훼손죄)

사람을 모욕하였거나 그의 명예를 훼손시킨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절 개인소유를 침해한 범죄

제283조(개인재산훔친 죄)

개인의 재산을 훔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훔친 경우에는 3년이상 8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4조(개인재산빼앗은 죄)

개인의 재산을 빼앗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빼앗은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5조(개인재산속여가진 죄)

개인의 재산을 속여가진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속여가진 경우에는 2년이상 7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6조(개인재산횡령죄)

개인의 재산을 횡령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횡령한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7조(개인재산대량략취죄)

이 법 제283조-제286조에 이르는 여러가지 행위를 하여 략취한 량이 대량인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8조(개인재산강도죄)

사람의 생명, 건강에 위험을 주는 폭행, 협박을 하여 개인의 재산을 강도한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여러번 또는 공모하여 혹은 무기, 흉기를 리용하여 하였거나 대량의 개인재산을 강도한 경우에는 4년이상 9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9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89조(무거운 형태의 개인재산략취죄)

개인재산략취행위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0조(개인재산고의적파괴죄)

개인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대량의 개인재산을 파괴한 경우에는 4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의 개인재산을 파괴한 경우에는 4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10장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

제291조(비법적인 자금거래 및 소유, 리용죄)

비법적으로 조성한 자금을 그 원천과 용도를 위장할 목적으로 거래하였거나 비법적인 자금이라는 것을 알려서 소유 또는 리용한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이상의 자금을 거래하였거나 소유 또는 리용하였을 경우에는 2년이상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2조(비법적인 돈자리개설 및 계약체결죄)

비법적으로 돈자를 개설해주었거나 생명보험, 신탁업무계약같은 것을 체결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범죄행위가 조장되게 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

형에 처한다.

제293조(자금원천과 용도, 거래자의 신분을 확인하지 않은죄)

자금원천과 용도의 적법성이 검증되지 않았거나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자로부터 자금을 접수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제294조(거래자확인자료같은 문건을 분실, 소각한죄)

거래자확인자료같은 문건을 보관기일이 지나기전에 분실, 소각하여 감독기관의 사업에 지장을 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5조(의심되는 자금거래를 보고하지 않는 죄)

의심스러운 자금거래를 보고할 의무를 지닌자가 그러한 행위를 발견하고도 재때에 금융정보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특히 대량 이상의 비법적인 자금거래에 대하여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6조(테러자금보장 및 송달죄)

반국가적 고의가 없이 다른 나라 테러조직이나 그 성원에게 리용당하여 자금을 보장해주었거나 송달해준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7조(조사에 협력하지 않은 죄)

자금세척 및 테러자금지원행위조사와 관련하여 해당 권한이 있는 기관의 협력요구를 거부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해당 권한이 있는 기관의 조사활동에 커다란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8조(자금동결 및 압수, 몰수하지 않은 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행위를 조사하면서 응당하여야 할 자금동결이나 압수, 몰수를 하지 않는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299조(자료루설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 적발사업과정에 알게 된 자료를 루설한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로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 적발사업에 엄중한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2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제300조(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에 대한 은닉죄)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범죄를 감추어준자는 1년이하의 로동단련형에 처한다.

앞항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발 간 등 록 번 호
11-1332522-000067-01

2017-03
책임연구보고서

북한 형사법 체계 및 개정형법에 관한 연구

2018년 9월 발행

발 행 인 : 치안정책연구소장

발 행 처 : 치안정책연구소

충남 아산시 신창면 황산길 100-50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